

정보운동 액트온 | ActOn

행정심의에서 자율규제로

통권 제15호 | 2011년 제4호



에코펜 세트

“진보넷이 드리는 2011년 회원 선물입니다.”

행정심의여, 이제 안녕~

언젠가 한 토론회에서 멀쩡하게 생긴 교수님이 '집회에서 대통령을 조롱하는 퍼포먼스가 등장하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하고, 이제 한국사회도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더군요. 실소가 나왔습니다. 그래, 당신이 언제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해 본 경험이 있겠어? 신문이든, 방송이든, 이런 토론회 자리든 어떤 공간을 통해서든 자신이 하고자하는 말을 할 수 있었겠지. @2mb18noma 라는 트윗 계정이 차단되고, 박제동은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트윗했다고 수사를 당하고, G20 포스터에 쥐그림 좀 그렸다고 고발당하는 그런 사회에서, 한번도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해본 경험이 없었을 그 교수는 사회가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검열자들의, 즉 우리 사회 권력자들의 보편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행정심의 자체가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술이 들어간 노래가사를 심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비웃습니다. 나꼼수를 심의하겠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웃습니다. 너무 어처구니없는 그들의 심의는 전혀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미디어, 인권 단체들은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행정 심의를 폐기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율적인 룰을 만들어나갈 능력이 있으며, 더이상 누군가 끈대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행정심의여, 이제 안녕~

오병일 @antiropy

계간 정보운동 액트온 ActOn

통권 제15호 | 2011년 제4호

발행일 2011년 12월 12일

등록일 2003년 8월 1일

발행처	진보네트워크센터
발행인	이종희
편집인	오병일
편집	하주영
표지	덩야핑
인쇄	천광문화사

등록번호	서울 바03553
주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 우리타워 3층
홈페이지	http://act.jinbo.net
이메일	antiropy@jinbo.net
전화	02-774-4551
ISSN	1976-1953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본 정보운동 ActOn에 실리는 모든 내용은 '정보공유라이선스 2.0:영리금지'를 따릅니다.
www.freeuse.or.kr/license/2.0/yg

“행정심의에서 자율규제로”

Section 001. 행정심의에서 자율규제로	… 07
심의, 규제 패러다임에서 협력 패러다임으로 / 원용진	… 08
방심위의 방송심의 폐지냐? 유지냐? / 김동찬	… 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의 문제점 / 정민경, 장여경	… 18
Section 010. 이슈	… 25
MBC 어린이집 보도, 또 다른 폭력이다 / 장여경	… 26
피투피(p2p), 민중에게 권력을!/ 조동원	… 28
HWP 우리 그만 만나 / 소재성	… 35
전자주민증과 정보인권 / 장여경	… 50

Section 011. 문화는 공유를 타고	... 78
Section 100. 이달의 북킹	... 82
Section 101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 85
Section 110. 회원 인터뷰	... 93
Section 111. 센터 속사정	... 103

Section 001. 행정심의에서 자율규제로

심의, 규제 패러다임에서 협력 패러다임으로 / 원용진
방심위의 방송심의 폐지냐? 유지냐? / 김동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의 문제점 / 정민경, 장여경

심의, 규제 패러다임에서 협력 패러다임으로

원용진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서강대 교수)

‘꼰대’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연일 뉴스의 중심에 선다. 특정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겨냥한 심의와 결정, SNS와 앱을 이용한 소통에 대한 심의 및 차단 계획, 과도한 심의에 반대하는 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고 징계 등. 공적 기금을 활용하는 국가 기구가 언론과 시민의 소통에 관여한다 하여 위헌시비를 불러일으키던 위원회였다. 그러나 어느 틈엔가 위헌 시비를 벗어나 사회 내 소통 질서를 뒤흔들며 정치권력의 ‘홍위대’ 역할을 해내고 있다. 새로운 미디어가 대부분 웹과 통신으로 재매개(re-mediation)되면서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활약이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사회 내 여러 형태의 효과들과 결합해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사회적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미디어에 대해서는 엘리트들은 대체로 음울한 예상을 한다. 자신들이 제시하는 사회의 방향을 대중이 배신한다며 자주 실망한다. 대중이 엘리트의 말을 따르기 보다는 어리석은 대중적 여론이나 인기에 영합하려는 미디어를 더 추구한다며 안타까워한다. 미디어 연구자는 이를 두고 ‘제 3자 효과 (the third person effect)’ 라 이름을 붙였다. 미디어에서 내놓는 내용을 ‘자신 말고 제 3자들’ 이 잘 따른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미디어 담론은 늘 대중을 우려하는 엘리트 목소리로 채워진다. 대중매체의 시대를 지난 지금에도 그 같은 효과에 입각한 담론은 여전하다. 트위터 등의 SNS가 정치적 유언비어를 만들어내고 대중을 현혹한다는 믿음이 의외로 광범위하고 견고한 것도 그런 탓이다.

심의를 맡고 있는 기구들에 대해 ‘꼰대’ 심의라는 지적을 갖다 붙인다. 심의를 맡은 자들이 사회의 변화나 미디어의 변화를 전혀 따라잡지 못한 채 개인적 입장에서 심의를 행한다는 지적이며 비판이다. 터무니없는 지적은 아니다. 가끔 공개되는 회의록이나 징계 사유문을 확인해보면 최근의 경향에서 터무니없이 멀리 떨

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는 일은 다반사다. 개인의 문화적 취향을 투사시키거나 연령대와 부합하는 윤리짓 대로 재단하는 일도 많다는 느낌이다. 그 같은 비 전문성에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주문까지 챙겨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심의 기구들은 사회적 조롱거리로까지 전락해 있다. 대중의 취향이나 선택을 믿지 못하는 의구심에 정치적 비 자율성까지 드러내고 있으니 심의기구가 면을 세우지도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SNS에 관여하겠다는 발표 이후엔 시민들에 의해 희화화 대상으로까지 전락하고 있다.

‘꼰대’ 심의든, 희화화된 간에 심의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 표명에는 일정 사회적 영향력이 뒤 따른다. 이른바 ‘갑자기 효과(chilling effect)’가 그것이다. 심의를 하고, 계정을 삭제하거나 권고를 하는 일이 뒤 따를 것을 알면 제작자, 사용자는 당연히 몸을 사린다. 불만스럽지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밖에 도리가 없다. 이메일 계정을 뒤지는 일이 생기자 ‘사이버 망명’이 일어나 외국 검색 회사의 계정을 갖는 일이 늘어난 경험이 있지 않던가? 자신의 글이나 프로그램이 심의 대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미리 알아서 차단하는 자기 검열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궁극적으로 온 사회의 말하기 방식, 내용, 빈도가 모두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회를 경색시키는 ‘공안적 행위’를 해낸다는 지적은 괜한 말이 아니다. ‘꼰대’라는 희화화 뒤에는 몹쓸 비생산성이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of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KOCSC). The main navigation bar includes 'HOME', '사이트맵', 'ENGLISH', and a search bar. Below the navigation, there are links for '전자민원', '참여마당', '정보공개', '정보마당', '알림마당', '위원회 소개', and '+ 전체보기'. A secondary navigation bar includes '위원회소개', '조직도', '소속위원회', and '찾아오시는길'.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large graphic with the KOCSC logo and the text '위원회소개' and '사무처 조직도'. Below this, a detailed organizational chart is displayed, starting with '사무총장' at the top, followed by '감사실'. Under '감사실', there are five main branches: '기획조정실', '방송심의실', '통신심의실', '권익보호국', and '운영지원국'. Each branch lists several sub-committees or units. For example, '기획조정실' includes '전략기획팀', '대외협력팀', '홍보팀', and '연구분석팀'. '방송심의실' includes '방송심의기획팀', '저상파방송심의팀', '유료방송심의팀', and '광고심의팀'. '통신심의실' includes '통신심의기획팀', '불법정보심의팀', '유해정보심의팀', and '권리침해정보심의팀'. '권익보호국' includes '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이용자지원팀', and '유해한경개선팀'. '운영지원국' includes '총무팀', '운영관리팀', and '정보전산팀'. A separate box on the right lists '지역사무소 (5)'. At the bottom left, there is a '민원접수 1377' box with the text '국민안심 1377' and '국민안심 137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kocsc.or.kr>>

공명효과(resonance effect)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권력에 의한 심의의 폐해를 말했지만 이는 한 특별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이후엔 심의의 폐해가 다방면에서 만연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뿐 아니라 언론사 자체 심의, 기타 행정부에 의한 타율 심의 모두 입을 막는데 몰두하고 있다. 그로 인해 소통이 경색되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불만이 팽배해있다. 이는 공적인 소통을 정부나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사고하는 경직된 관료주의적 발상 탓이다. 시민사회 내 언론 조차도 정부나 정권의 ‘선의’ 를 전달하는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소명을 강조하고 있는 사회 분위기다. 정부 기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며 자신들의 윤리 잣대에 맞춘 표현, 소통을 강조한다. 대중의 욕망이나 소통방식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는 이른바 정권 효과까지 보태져 표현물에 대한 심의 등이 강화되고 간섭 혹은 정치적 관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사회 내 여러 소통 기구들은 비슷한 행태를 같이 드러내는 공명효과(resonance)를 연출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을 보호한다며 게임 시간을 제한하고, 가요에 따르는 내용을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 관여의 핵이 되고 있다. 각 언론사는 게이트 키퍼와 관련된 인사조치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 자율적이어야 할 각종 문화예술 기구에 인사잡음이 끊이지 않고 관료적 인사 파동이 일고 있음도 같은 맥락이다. 방송사에서도 전에 없이 출연자들의 의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영화계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특정 작품에 지원을 거부해 망신을 자초한 일도 있다. 특정 정책에 불만을 표시한 시민들도 처벌을 받기까지 했으니 공직에 있으면서 내부의 정책 결정의 불합리함을 비판한 사람들이 겪은 고통은 불문가지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 들어서 표현, 소통, 대화를 지향하는 욕망들은 전방위적으로 찬서리를 맞았다.

시민들의 표현, 소통, 대화에 국정, 국가 사업의 홍보가 자리를 차지했다. 표현, 소통, 대화의 중심에 서야 할 문화체육관광부는 홍보기구로 전락했다. 효율성을 위한다며 없애기로 한 약속과는 달리 홍보 기구는 과거와 다름없는 활약을 폈다. 한미 FTA, G-20 회의, 4대강 사업에는 온 부처가 다 동원되어 홍보에 몰입했다. 시민사회의 소통은 위축시키고, 정책 홍보는 팽창시키는 방식으로 인해 사회는 전에 없던 정서구조(structure of feeling)를 만들어냈다. 위로부터는 억압이 있고, 그에 반하는 것은 위축되거나 삭제되니 모두 공식적 담론에 대한 신뢰를 걷어 들이기 시작했다. 신뢰를 갖지 못하는 공적 담론기구를 피해 비공식적 담론기구를 새로운 소통수단으로 택한다. SNS가 폭발적인 담론 소통 기구로 등장하고, 팟 캐스팅을 이용한 ‘나는 꿈수다’ 가 2011년 최고의 히트 발명품으로 등장한 것도 그런 배경 탓이다. 곳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회적 심의는 이미 희화화되고 있다. 관련 기구들의 신뢰는 추락을 거듭했다. 사회가 퇴락한 느낌을 주고, 활력을 잃고 있으며 적의가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시민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반응을 끊어둔 현 시스템으로는 그 신호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

인내 하더라도 대처할 방안이 없다. 이른바 사회적 소통이 완전히 퇴락한 것이다.

인내, 관용, 리터러시

사회 내 여러 기구를 통해 표현과 소통의 내용을 심의하겠다는 의지가 사회적 소통의 퇴락으로까지 이어졌다. 심의하는 국가 장치를 지닌다는 사실 자체는 권력으로서는 늘 유혹일 수 밖에 없다. 언제든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유혹하기 때문이다. 심의 기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심의 당하는 쪽에 겁주기 효과를 주고, 심의 기구를 언제든 동원하는 쪽에는 권력 활용 의지를 작동시킨다. 권력 활용 의지가 발동되면 금방 위축 효과를 얻어 성공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사회적 소통의 퇴락이 아니라 건강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착시 현상이 생긴다. 이어 위생적 사회 소통을 이뤄냈다는 공명심도 발생한다. 이는 사회적 심의를 더욱 공식화하거나 강화하려는 관료적 욕망으로 되 먹임진다.

원래 소통, 대화의 장은 시민들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제 3자 효과에서 바라보듯 대중들이 낮은 차원에서 비윤리적인 갑론을박에 머물기도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회 내 소통, 대화의 장은 긴 기간을 통해 견제, 비판, 격려, 화해 등을 통해 소통과 대화의 장을 만들어가는 자정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 자정 능력을 효율적으로 발동시키는 사회적 힘(impetus)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시민사회는 그 힘을 전파, 전수, 재생산시키는 것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대화, 소통과 관련된 인내, 관용, 리터러시 등과 관련된 교육을 의미한다. 심의를 통해 규제를 하는 대신 교육을 통해 대화와 소통을 더 신장시키자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심의 제도, 기구가 전환해 나갈 방향은 분명하다. 시민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인내, 관용, 리터러시를 챙길 수 있는 제도, 기구로의 전환이다. 그 전환은 심의, 규제 패러다임에서 협력 패러다임으로의 변화이고, 진정성있는 민주주의로의 진입이다.

심의, 규제 패러다임에서 인내, 관용, 리터러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대중에 대한 믿음의 전환과도 통한다. 대중에 대한 ‘꼰대적’ 인식은 심의와 규제를 지속시키려는 의지로 이어진다. 대중이 늘 취약한 심성과 윤리를 지니고 있다는 믿음이 심의와 규제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대중이 과거와는 달리 더 많이 토론하려하고, 알려하고, 참여하려 한다는 믿음, 그리고 스스로 자정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인내, 관용, 리터러시 패러다임으로 이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지금의 과도한 심의 사회, 규제 사회의 모습은 대중의 욕망과는 한참 거리가 먼 관료 사회의 모습의 재현이다. 권력 활용의 욕망의 결과다. 결국 비민주적 사회성의 집적체처럼 보인다. 새로운 정권의 수립을 넘어서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 이어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지금 작동하고 있는 심의, 규제 제도 및 기구들은 제거해야 할 제 1순위에 등극시켜야 한다.

방심위의 방송심의 폐지냐? 유지냐?

- 자율규제 강화를 통한 행정심의 축소방향 제안

김동찬 (언론연대)

1. '존폐의 기로에 선 방심위

‘해체하라’ 는 가장 강한 톤의 투쟁구호다. 그러나 때로는 규탄의 강도를 더욱 강력하게 표현할 때 상투적으로 쓰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종종 현실성 없는 정치공세라는 느낌을 들게 만든다. 질타를 받는 대상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많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도 처음에는 그랬을 것이다. 2009년 5월, 미디어전문지 <미디어스> 는 방심위 출범 1년을 맞아 폐지를 제기하며 ‘안녕히 가십시오. 방통심의위’ 라는 배너를 배포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심의활동 전체가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 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때만해도 방심위는 외부의 제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로부터 채 3년이 되지 않은 지금, 방심위 ‘해체’ 는 더 이상 상투적 구호가 아니다. 나라 밖에서는 UN이 방심위를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국가통제기구로 지적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터넷 심의를 민간에 이양할 것을 권고했다. 헌법재판소도 방심위의 인터넷 심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방심위가 무분별한 심의를 거듭하는 동안 ‘방심위 해체’ 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어느덧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출되고 있다. 방심위는 진짜 존폐의 기로에 섰다.

통신심의분야는 이미 오래 전부터 행정심의 폐지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방심위의 인터넷 심의는 크게 세가지다. 불법정보 심의와 청소년유해물, 그리고 기타 불온한 유해정보가 심의대상이다. 이중 아동 포르노와 국가기밀누설 등 불법성이 매우 뚜렷한 표현물과 어린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통규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심의는 그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국제적으로도 정부가 인터넷 내용을 직접 규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때문에 권력을 가진 심의주체를 해체하여 인터넷 심의를 폐지하는 것이 가

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인터넷 내용규제는 사용자 또는 그 집단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불법성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가 해야 한다는 게 기본원칙으로 자리를 잡았다.

2. 방송심의,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방송분야는 사정이 좀 다르다. 방송에서도 행정심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통신과 달리 방송에 대한 행정심의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또한 매체의 특성상 통신에 비해 사회적 규제의 필요성이 훨씬 높다. 거칠게 요약하면 통신심의가 ‘심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심의의 필요성)의 문제라면, 방송심의를 ‘누가’ , ‘어떻게 할 것인가’ (심의의 방법론)의 문제가 논의의 뼈대다. 때문에 그 동안 방송심의를 대한 논의는 ‘폐지’ 보다는 ‘개선’ 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결과 방심위 해체 주장도 방송보다는 통신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최근 들어 방송분야에서도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MB정권을 통해 행정심의의 문제점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만큼 보다 큰 폭의 제도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다. 일부 언론학자와 현업 언론인들은 방심위를 폐지하고, 방송사 자율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전히 행정심의기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남아있다. 시청자 단체들은 방송의 상업화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심의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맞선다. 양쪽은 현행 방심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해결책에서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다.

3. 자율심의 강화를 통한 행정심의 축소방안 제안

그러나 행정심의나 방송사 자율심의나는 반드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OX퀴즈가 아니다. 이미 현실에서 행정심의제도와 자체 심의제도가 공존하고 있다. 이 두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심의의 병폐를 없애고, 자율심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행방안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제시하는 이행방안은 행정심의를 ‘최소심의’ 를 지향하며, 자율심의를 ‘사업자’ 심의가 아닌 ‘시청자 참여’ 심의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1) 방송사 전치주의 도입

행정심의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목표는 ‘최소심의’ 의 구현이다. 방심위 출범 초기부터 언론시민사

회단체들은 ‘최소심의’ 원칙을 지킬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그러나 더 이상 운영개선 문제로 방치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법, 제도적으로 심의대상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방심위의 의지와 관계없이 ‘최소심의’ 를 강제하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안된 것이 방송사 전치주의의 도입이다. 방송사 전치주의는 시청자가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방송사의 민원처리절차를 거치도록 하자는 것이다. 방송사는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방심위로 넘어갈 경우 그 내용과 내부 심의기준에 따른 처리과정을 문서로 제출한다. 방심위는 민원인의 주장과 방송사의 불만처리내용을 근거로 심의규정 위반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전치주의가 도입되면 필터링 역할을 통해 집단민원과 청부심의를 제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자체심의 강화와 시청자 민원처리제도 개선

방송사의 자체심의와 시청자 불만처리 제도를 개선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방송사는 심의와 시청자 담당부서를 한직으로 취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방송심의 인력에 대한 미디어교육, 인권교육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시청자 불만처리과정에서 시청자위원회의 참여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 전치주의를 안착하고 자체심의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방송평가¹에서 방심위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는 배점을 줄이고, 자체심의와 시청자 불만처리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항목의 배점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² 방송사 전치주의의 도입은 자율심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시험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3) 위헌성 제거와 심의규정 축소

심의대상을 축소하기 위한 두 번째 방안은 심의규정 개정이다. 심의규정 개정은 행정심의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일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방송에 대한 행정심의 자체를 위헌으로 보긴 어렵다. 그러나 현행 방송심의규정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벗어나 위헌의 소지가 높다.

3-1) 공정성 심의 폐지

공정성 조항은 자율규제로 이행해야 할 조항 중에 하나다. 방심위는 2008년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하여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면서 일방의 견해만을 방송했다’ 는 이유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내렸다. 이 때 적용한 공정성 조항과 함께 양심에 반하여 사과를 강제한 제재조치도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방송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2 현행 방송평가에서 지상파TV의 자체심의 운영 및 결과평가 배점은 25점, 방송심의규정 준수여부 100점, 시청자불만처리의 적절성 평가 30점

모두 위헌의 소지가 높다.

공정성 심의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정성 규정은 금지행위와 허용행위의 기준이 불명확해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본다. 당시 <PD수첩>에 적용된 심의규정 9조 2항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균형성’ 을 상실하는 것인지 의미가 분명치 않다.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해외사례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 ‘산술적인 시간의 균형’ 을 중시하는 반면 영국은 불편부당성이 ‘균등한 시간의 배분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 하여 각기 다르지만, 공정성 개념의 한계가 무엇인지 제시해 기준을 정하고 있다.

특히나 우리 방심위의 경우 정부여당에 의해 임명된 심의위원들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방송에 대하여 공정성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크다. 정파적인 구성에 자의적 해석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언론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 방심위 출범 이후 작년(2010년)까지 이 조항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은 지상파프로그램만 16건에 이르는데 방송의 내용은 대부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보도였다.³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 공정성 심의는 행정심의를 폐지하고 방송사 자체 강령과 제작 가이드라인에 따라 프로그램의 제작과 구성에 하자가 없는지 살피는 자율심의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위헌적 심의규정 폐지

현행 심의규정에는 공정성 조항 말고도 위헌적 내용들이 곳곳에 널려있다. 27조 품위유지가 대표적인 예다. 지난 9월 방심위는 MBC <무한도전>이 “과도한 고성과 저속한 표현으로 청소년의 바른 언어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맨 엉덩이를 때리는 모습은 방송의 품위를 저해했다” 며 이 조항을 적용해 징계했다. 이 조항의 2항은 “저속한 표현으로 혐오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지는 28조는 건전한 생활기풍이다. 이 조항은 방송사에게 ‘음란, 퇴폐, 허례허식, 사치, 낭비 등을 신중히 다룰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저속함’ , ‘혐오감’ 은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이다. 또 무엇이 퇴폐인지, 어디까지 사치인지 객관적 기준이 없다. 결국 자의적 해석이 개입하게 된다.

현행 심의규정으로는 언제든 모든 방송이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위헌적 규정을 토대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 방심위의 비상식적인 심의가 나올 때마다 심의위원

3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공정성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은 보도의 주제 (총16건)
: 미국산 쇠고기 수입(2건), 언론장악 비판(미디어법, YTN 비판 등, 10건), 천안함(1건), 4대강(1건), KTX 승무원 투쟁(1건), 월드컵중계권(1건), KBS 9 뉴스 화면조작(1건)

의 수준을 비난하지만 무식하고, 끈대 같은 심의도 적용 가능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심의규정 중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심의규정은 폐지해 심의규정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또한 심의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요한 심의규제 내용은 방송법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도 아닌 방송위가 자의적으로 제정한 ‘심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의하고 제재하는 것은 행정권에 의한 언론 통제이기 때문이다.

3-3) 사회적 합의를 통한 어린이·청소년보호 심의규정 개선

다만,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선정성, 폭력성, 인권과 관련된 조항들은 체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당 심의규정을 개정할 때는 어린이단체, 청소년 보호단체, 여성단체, 학부모단체, 청소년단체, 미디어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⁴

4. 시청자 참여와 자율규제 거버넌스 확립

행정심의를 축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자율심의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다. 자율심의가 자리를 잡으면 행정심의회는 자연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방송현업자들은 행정심의제도의 부당성을 강조하는데만 몰두하고 있다. 그들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행정심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율심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정치적 독립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권 동안 각 방송사에서 발생한 불법사태, 방영연기, 프로그램 간섭 등의 사건은 방송사의 지배구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정권에 대한 각종 찬양방송은 내부 심의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쳐 수년간 전파를 낭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행정심의제도나 방송사 자율심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방송사의 자정능력도 의심스럽다. 종편도입과 직접 광고영업에 따라 더욱 치열한 광고시장에 노출된 방송사들이 경제적 이익 앞에서 공익유지를 위한 자율규제에 최선을 다할지도 물음표다. 영화 <트루맛쇼>의 폭로와 이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대응을 보면 방송사가 공익의 담보자이기에 앞서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행위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⁵ 미국방송협회(NAB)의 자율규제 실태를 분석한 한 연구자는 “독점적 지위의 자율규제 기구는 필히 사익 증대 관점에서 지대추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4 최영목, <위험적 미디어 검열기관, 재편이나, 폐지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토론회 발제문

5 지상파방송사들은 <트루맛쇼>를 통해 맛집프로그램의 취약한 실태 - 브로커 개입과 돈거래, 가짜손님동원 등 - 가 폭로된 뒤에도 자체심의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사건을 덮고 자사를 변호하기에 급급했다.

내놓기도 했다.⁶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방송사업자나 그 단체들이 독점하는 방식의 자율심의 전환에는 동의하기 어렵다.⁷

대신 방송사에 의한 자율심의와 시청자가 참여하는 타율심을 결합하는 방식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방송사의 자율심의에는 노동조합 등 내부 현업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일례로 일부 방송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노사 공정방송협의체를 보도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처리 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BBC모델이 참조할만하다. BBC는 뉴스에 대한 시청자불만 처리과정을 총 3단계로 운영하는데, 2단계에서 BBC내부 구성원으로 구성된 BBC Editorial Committee(보도편집심의위원회)가 심의를 담당한다. 공정방송협의체를 이 단계에 적용해볼 만하다.

시청자의 참여는 현행 법정기구인 시청자위원회의 권한⁸과 기능을 실질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선임방식을 개정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상임위원의 도입을 통해 위원회가 일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 내부에서 자체심의와 시청자 민원처리 제도의 운영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이렇게 내부 제도를 강화하게 되면 행정기구에 의한 외부규제를 상당히 축소할 수 있고, 부당한 규제에 대해서도 대응력을 키울 수 있다. 물론 이런 내부심의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방송 사업자-현업자-시청자 사이의 합의와 상호노력이 필요하다.

6 오구스(Ogus, 1995)

7 유료채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율심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 그러나 지상파방송의 직접수신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90% 정도의 시청자가 유료방송에 가입하고 있고, 채널선택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완전자율심의로의 전환은 시기상조다. 유료 방송시장이 뚜렷이 확정되고, 시청자들의 채널선택권이 다양하게 보장될 때까지는 위에서 제안내용과 같이 개선된 규정에 의한 행정심의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종합편성채널 역시 의무재송신 지위가 유지되는 한 지상파채널과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

8 현행 방송법은 시청자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의 편성은 물론 프로그램의 내용, 나아가 방송사의 자체심의규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는 재허가시 방송평가에 반영된다. 방송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청자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가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만처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의 문제점

- 행정심의에서 자율규제로

정민경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들어가며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앱 심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겠다는 방침이 화제가 되어, 네티즌, 시민사회는 이에 크게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으며, 급기야 시민단체는 방통심의위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방통심의위의 SNS, 앱 심의 전담팀인 ‘뉴미디어정보심의팀’에 대한 반발의 원인은 방통심의위가 기존에 심의해왔던 방식과 심의기준에 대한 불신이 낳은 결과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행정기구인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상의 불법정보나 유해정보에 대해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하는 데 있다. 행정심의회는 바로 정부가 인터넷 게시글을 검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검열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의 비판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한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대부분 민간자율심의기구에서 인터넷 상 표현물을 심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검열기구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방통심의위는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일까?

불온통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방통심의위의 탄생

정부는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불건전한 정보를 규제하기 위해 1991년 「전기통신사업법」 제정을 통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금지하였다. 1995년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제53조의 2항에 의거하여, 1995년 4월 13일 정보통신윤리위원

회가 설립되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내용심의기구로 인터넷 내용심의를 담당하여 불온통신에 대하여 삭제,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불응시 정보통신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였으며 불이행시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라는 처벌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2년 6월 27일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규정하고 있는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 후, 정보통신부는 2002년 12월 종전의 규제대상이었던 “불온통신”을 “불법통신”으로 바꾸고 통신심의제도를 계속 이어갔으며 2007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옮겨갔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구)방송위원회와 (구)정보통신부를 통합하여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구)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기능과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통신심의기능을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탄생하였다.

방통심의위의 심의의 문제점

방통심의위는 개인이나 포털, 방송통신위원회 및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심의를 요청받거나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인지한 불법정보를 심의한 후 시정요구 결정을 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권고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닐 경우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정보의 성격에 따라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동법 제44조의7 제2항과 제3항).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동법 제73조 제5호).

한편, 불법정보는 아니지만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방통심의위는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 제4호). 또한 대통령령에는 위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방통심의위가 심의 및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다시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8조). 이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는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 규정을 갖고 있지는 않다.

결국 실질적인 심의의 전체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 1〉 방통심의위 심의 구조

근거조항	시행령 내용	세부심의사항	제재방법(세부내용)
설치법 제 21조 제4 호	(1)망법 제44조의7	음란	시정요구: (1)해당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명예훼손	
		스토킹	
		네트워크 교란	
		‘영리성’ 청소년유해물	
		사행행위	
		국가기밀	
		국가보안법	
		범죄교사 및 방조	
	(2)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	상기(1)+(2)+표시의무
(3)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출처: 박경신⁹

또한 방통심의위는 자체적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¹⁰에 의해 정보의 불법성, 유해성 등을 심의한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표시의무이행, 표시방법변경 등의 시정요구를 한다(방송통신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내지 제4항). 2008. 5. 16. 설립 이후 2010. 12. 31.까지 인터넷게시물에 대한 심의 건수는 총 99,693건으로 매월 약 3,115건이고, 이 중 방통심의위에 의해 시정요구가 의결된 건수는 매월 약 2,304건이다.¹¹ 구체적인 심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9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내용심의의 위헌성”, 한양대학교 법학논총 제27집 제2호, 2010, 65-99쪽.

10 이 규정은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을 그대로 이어받아 별다른 개편 없이 사용해 왔다.

<http://www.kocsc.or.kr/02_infoCenter/info_Law_View.php?ko_board=info_Law&ba_id=1881&page=1>

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1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백서 : 2008.2. ~ 2011. 4』, 201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공개 종합. 이하 인용된 통계의 출처는 모두 같음.

〈표 2〉 방통심의위 심의 현황 (2008년 ~ 2010년)

* 건수

구분	심의	시정요구 (심의 대비 비율)	이행 (시정요구 대비 비율)
2008	29,589	15,004 (50.7%)	14,997 (100%)
2009	24,346	17,636 (72.4%)	17,634 (100%)
2010	45,758	41,103 (89.8%)	40,662 (98.9%)
계	99,693	73,743 (74.0%)	73,293 (99.4%)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방통심의위에 의해 심의의 대상이 된 게시물들은 거의 삭제 등 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게시물의 대부분이 인터넷망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되고 있다. 사실상 100%의 이행율은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가 수용자에 대하여 실질적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상호비판을 통해 인터넷 게시물의 유해성을 소화해 내기 보다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를 통해 인터넷 게시물을 퇴출시키고 표현게시물의 유통 여부를 정부기관의 판단에 의해 통제함으로써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 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방통심의위는 자신들은 행정청이 아니며 삭제 등 시정요구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라고 주장해 왔다. 형식상 ‘권고’이기 때문에 이 시정요구의 법률적 지위가 ‘비권력적 행정지도’라는 분석이 존재한다.¹²

그러나 그 위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상임으로 임명되고 형법 등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편, 국가로부터 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기관의 규칙이 제정·개정·폐지될 경우 관보에 게재·공표된다는 점에서 방통심의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합의제 행정청에 해당하고 그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¹³ 이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¹⁴

12 지성우, “현행 통신심의제도의 법적 문제점에 대한 고찰”, 『정보인권의 법적 보장과 그 구체화 공동학술세미나』, 국가인권위원회, 2010. 12. 23. 참고.

13 서울행정법원 2010. 2. 11. 선고 2009 구합35924 판결

14 헌법재판소 2011 헌가1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제청(심리중)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가 일종의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때 게시자 등에 대한 사전고지와 청문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은 큰 결함이다. 이러한 이유로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방통심의위가 게시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면서 직접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사전적으로 의견제출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다.

무엇보다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게시물의 불법성을 판단하고 게시물의 삭제 등 인터넷망으로부터의 제거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¹⁵ 먼저, 행정기관은 사법부와 달리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그 판단이 자의적이거나 정치권력을 비호하는 용도로 동원될 가능성이 있고 사법심사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행정기관의 판단 내지 처분은 잠정성을 띠 수밖에 없다. 인권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심의제도가 사후심이라고 할지라도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한정되어 위축 효과가 방지될 정도로 심의대상과 심의기준이 명백하지 않는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되고 그 결과 현행 「헌법」이 검열제도를 금지하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한 심의의 경우 법원의 심사 전에 정보·수사기관인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판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통심의위의 심의가 이루어지며, 그 인용과 이행율이 100%에 달하는 문제는 심각하다.¹⁶ 극소수 이행을 하지 않는 운영자에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의 명령이 떨어진다. 지난 2003년부터 2011년 4월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의 명령을 받은 게시물은, 모두 8호, 즉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것이었다.¹⁷ 최근에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사이트가 이 명령에 의해 폐쇄되었고 같은 방식으로 인권운동사랑방, 노동전선 등 인권노동운동단체에도 게시물 삭제 명령이 내려졌다.¹⁸

그 밖에도 기관별 심의 신청 및 결과 현황 통계(2010년 1월 1일~12월 31일)에서 전체적으로 경찰 등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비율이 압도적이며 그 시정요구와 이행 비율도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15 박경신, 앞의 글.

16 2008년 발족 후부터 2010년 7월까지. 최문순 의원 보도자료 2010. 10. 19.

17 방송통신위원회 정보공개에 의함

18 2011. 11. 이들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이 각기 제기되었다.

〈표 3〉 방통심의위에 대한 기관별 심의 신청 및 결과 현황 (2010년)

구분	심의	시정요구 (심의 대비 비율)	이행 (시정요구 대비 비율)
경찰 등 중앙행정기관	13,086	12,772 (97.6%)	12,127 (94.9%)
한국마사회 등 기타 공공기관	8,472	8,425 (99.4%)	8,385 (99.5%)
온라인서비스제공자	599	25 (0.4%)	25 (100%)
일반인	10,693	8,333 (77.9%)	8,195 (98.3%)
합계	32,850	29,555 (89.9%)	28,732 (97.2%)

즉, 방통심의위는 공공기관의 요청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본 심의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요청을 검증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이 제도를 국민의 비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할 여지가 있다. 특히, 방통심의위가 심의하는 정보의 유형을 규정한 법 조항들에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이다.¹⁹

행정심의에서 자율심으로

2002년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즉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게 명확하면서도, 진정한 불온통신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입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규제대상이 다양·다기하다 하더라도, 개별화·유형화를 통한 명확성의 추구를 포기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한 경우 국가는 표현규제의 과잉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부족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라고 실시하였다. 여기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방통심의위는 과연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표현만을 규제하고 있을까? 방통심의위는 표현규제의 과잉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는가?

행정기구인 방통심의위가 사법부의 판단 전에 표현물의 불법성 등을 심의하여 삭제 등의 조치

19 헌법재판소 2008헌마50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심리중); 헌법재판소 2011헌가13.

를 취하는 것은 표현물에 대한 위축효과를 발생시키며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불법성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사법부가 해야 하며, 불법정보는 유통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따로 행정기구가 심의하여 규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유해성의 여부를 행정기관이 판단하는 것 또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다. 방통심의위의 유해성 심의는 헌법재판소가 2002년 불온통신 위헌확인 당시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으로 분류한 바 있는 ‘저속한’ 표현과 접근까지 금지할 이유가 없는 선정적인 표현물도 ‘미풍양속’에 반한다 하여 규제될 수 있고, 성, 혼인, 가족제도에 관한 표현들이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규제되고 예민한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표현들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있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된다”고 실시한 것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인터넷 상의 불법 유해 정보들을 ‘어디까지 규제하느냐’, ‘무엇을 규제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누가 규제하느냐’ 일 것이다. 확실한 것은 방심위의 인터넷 행정심의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 여부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불법이 아닌 다른 분야 심의는 자율규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명예훼손 등 신속한 차단을 요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행정심의회보다 오히려 포털 등 사업자를 통한 자율규제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심의하는 것이 합헌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이 또한 장기적으로 민간자율규제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방통심의위가 최근 SNS, 앱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전담팀을 꾸린 것처럼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여 인터넷 표현물을 규제한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청정지대로 만들 수는 없다. 글로벌한 인터넷 시대에는 스스로 규제하는 시민사회의 안목과 내공을 기르는 것이 소위 불법 유해 정보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불행히도 행정심의회가 존속하는 한 자율규제의 미래는 있을 수 없다. 행정심의 폐지하라.

Section 010. 이슈

MBC 어린이집 보도, 또 다른 폭력이다 / 장여경
피투피(p2p), 민중에게 권력을! / 조동원
HWP 우리 그만 만나 / 소재성
전자주민증과 정보인권 / 장여경

MBC 어린이집 보도, 또 다른 폭력이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18일 MBC TV는 구립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아동을 가혹하게 대하는 영상들을 방송했다. 믿고 맡긴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큰 충격을 줬고 여러 언론에서 ‘도가니’ 라는 표현을 써가며 앞다퉈 보도했다. 경찰은 전담 수사반을 꾸리며 적극 수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어린이 집 CCTV가 중요한 범죄 증거로 간주되고 있다.

그런데 이 영상이 불법적으로 유출된 것이라면? 그런 추정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에 방영된 영상 중 하나는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린이집 IPTV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을 때 IPTV 업체가 현장에서 상영한 것이다. 해당 업체는 어린이집에서 촬영된 CCTV를 인터넷으로 독점 공급하는 IPTV 사업자로서 어린이집 CCTV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 영상을 상영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IPTV는 정책 타당성 검증이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아 왔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 보육’ 정책을 시행하면서 장기적인 예산이나 인적 지원 보다는, 가시적인 효과가 큰 CCTV를 택했다. 특히 특정 업체에 독점적인 CCTV 인터넷 중계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는 바람에, 부모들은 특정 업체 IPTV에 가입할 것이 요구됐고 어린이집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했다. 서울시는 해당 업체로부터 서면으로 된 제안서나 계약서를 받은 바도 없다고 했다.

게다가 인터넷으로 아동의 모습과 음성을 녹화한 영상을 수집 및 전송하면서 부모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은 불법 논란을 불렀다. 대부분의 부모는 인터넷으로 아동의 모습을 접할 수 있다는 사실에 즐거워 했지만, 어떤 부모는 아동의 모습이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것에 반대했다. 개인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는 아동과 동의하는 아동이 한 화면에 공존할 경우 정보주체별로 영상을 분리하여 처리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업체는 “녹화는 없다, 유출은 없다” 고 주장했으나 토론회에서 녹화 영상을 공개했다. 업체에 의해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되고 녹화됐으며 외부로 유출된 것이다. 결국 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그런데 이 영상이 이번에 방송에 사용된 것이다. 어찌된 일일까?

아동에 대한 가혹행위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보육이나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 정책이 CCTV에 의존해야 할까? 무엇보다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 유출도 중대한 폭력이다. 어린 시절의 영상은 평생에 걸쳐 당사자도 모르는 채 인터넷 등을 떠돌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어린 시절 유튜브 등에 오른 영상으로 평생에 걸쳐 놀림 받는 사례들이 심각하게 보고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 9월 30일 새로 발효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법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녹음을 금지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상이 사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를 중계하는 업체가 자신이 중계하는 비공개 영상을 마음대로 열람하고 녹화하고 유출했다면 이는 불법이자 중대한 정보인권 침해이다.

언론의 사회 고발은 중요한 공익적 행위이다. 그러나 방송에서 CCTV 영상을 구하여 사용할 때는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 모든 곳은 잠재적인 범죄 장소이다. 공개된 장소 뿐 아니라 어린이집과 같은 실내, 심지어 가정 내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폭력과 범죄가 저질러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런 폭력과 범죄에 반드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모든 곳에서 일거수 일투족을 녹화해 그것을 인터넷에서 중계한다면 우리 사회는 정보 감옥이나 다름 없어질 것이다. CCTV 영상이 중계되어 만인이 만인을 감시하면 이 세상 모든 폭력이 사라질까? 오히려 은밀한 폭력이 조장될 수도 있다. 감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또 다른 폭력이다. 이번 CCTV 영상의 유출과 방영이 유감스럽다.

* <미디어오늘> 2011년 10월 25일자에 기고한 글입니다.

피투피(p2p), 민중에게 권력을!

조동원 (미디어운동/문화 연구)

1990년대 후반 미국, 학교 기숙사에 살던 대학생들은 인터넷에서 엠프쓰리(mp3)를 다운받아 음악을 듣기 시작했는데, mp3를 제공한 곳들은 대역폭을 과도하게 잡아먹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음반산업의 압력으로 오래가지 못하고 들쭉날쭉했다. 당시 대학생이자 해커였던 쉰 패닝(Shawn Fanning)은 좀 더 안정적으로 음악 파일을 얻을 수 없을까 해결책을 고민하면서 이용자들끼리 직접 파일 공유를 할 수 있게 한 p2p(피투피) 방식의 냅스터(napster)를 개발해냈다. 1999년이였다. 등장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고, 이듬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음반산업의 고소를 당하고 그 다음 해 법원의 사이트 폐쇄 명령을 받았다. 냅스터는 이용자들이 직접 파일을 공유하는 방식이었지만 공유 파일 목록을 중앙 서버에 모아 제공했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 공격의 핵심 대상이 되었다. 냅스터를 맞본 이상 붓물처럼 터진 p2p 파일공유 네트워크 문화는 냅스터가 사라진다고 해서 함께 사그라들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아예 그런 공격의 빌미를 없앴 냅스터의 대안들이 벌써 개발되고 있었다. 중앙 서버 없이도 분산적으로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인 그누텔라(Gnutella)와 카자(Kazaa) 등이 속속 나타났다.

음악이 된다면 영화는 어떤가. 영화나 티브이(tv) 방송물은 음악 파일보다 몇 십 배나 큰 대용량 파일이기 때문에 내려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생겼다. 이 때 또 한 명의 비정규 개발자이자 해커였던 브람 코헨(Bram Cohen)이 개발해 내놓은 빛토런트(BitTorrent)는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한 것이었다. 2001년이였다. 빛토런트는 내가 여러 또래들로부터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받는 족족 또 다른 또래들에게 동시에 업로드해준다. 내가 내려받는 파일이 많고 빠를수록 네트워크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 더 많아지고 그 가치가 더 높아지는 식으로 디자인된 것이다.

p2p 앱: 기술의 정치

당시 우리가 p2p에 놀랐던 것은 미디어산업과 법제도의 억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이 이어진 p2p 기술과 그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다음부터 앱)들이었고, 또 이 분산화 기술에 기초한 네트워크에 너도나도 접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만든 공유문화였다. 소비자로만 규정되던 사람들이 각자 좋아하는 것들을 적극 찾아나설 뿐만 아니라 널리 알리며 남들에게 전해주는 일에 재미를 붙인 것이다. 이미 풀뿌리 문화는 그래왔지만 이번에는 대량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리한 것이 달랐다. p2p 기술 덕분에 그저 얼굴도 모르는 님들이 전해주는 것들을 받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전체 공유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식이었다.

문화생산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보다 잘 전해지면서 그 사용가치의 실현은 아주 효율적이다. 반면, 지금껏 문화생산물의 배급과 유통을 전담해온 미디어 문화자본의 입장에서는 다르다. 먼저 돈으로 교환되어야 할 가치의 실현 기회를 상실함은 물론 그 교환 과정을 도맡으며 누려왔던 소비와 생산 과정에 대한 통제력까지 위협받는 일이었다. 이렇게 p2p는 시장 교환과 통제의 매개의 정치경제(학)을 실천적으로 지양하는 풀뿌리 기술문화가 되었다. 이 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매개가 동반하는 검열과 통제에 맞선 기술 저항문화가 그누텔라나 자유넷(freenet)과 같은 지속적인 p2p 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추동해왔다는 점이다.

인터넷이 p2p다

이와 같이, p2p라는 용어가 정보산업과 정보문화의 지각변동을 일으킨 것이 2000년 전후의 일이었다. 널리 알려진 것이 그 때이지만, p2p는 그 훨씬 전부터 존재해왔다. 컴퓨터간 통신을 위한 가장 오래된 통신 하부구조가 p2p다. 또 도메인 이름 시스템(DNS), 유즈넷(usenet), 세티앳홈(SETI@home), 혹은 여러 메신저 프로그램도 p2p 기술에 바탕한 것들이고, 무엇보다 인터넷 자체가 p2p 구조다. 1969년에 등장한 인터넷의 원조격인 아르파넷(ARPANET)은 서로 협력하는 이용자들이 동등하게 연결되는 P2P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삼았다. 그도 그럴 것이 아르파넷을 개발한 사람들이 곧 그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생산자와 이용자의 구분 자체가 불필요했다. 그래서 네트워크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요청하고 기다리거나 허락을 맡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유롭게 실행해 보고 네트워크에 제공하여 모두가 아무런 차별과 제약없이 이용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것이 초기 인터넷이 디자인된 철학이었고, ‘끝에서끝(end to end, e2e)’ 원리라고도 불렀다.

적어도 1990년대 초반까지 그런 문화가 지속된 덕에 인터넷은 그 누구의 소유물로 전락하지 않고 무

주공산으로 모두가 푸르게 푸르게 가꾸온 정보 공유지(information commons)가 될 수 있었다. 인터넷의 기술 철학이자 설계 원리인 e2e와 p2p는 공유지에서의 잉여의 수탈을 가능하도록 하는 중앙집중적 통제 의 매개가 필요없는 직접적 생산 관계를 함축했기 때문이다. 오늘날과 비교해볼 때 초기 인터넷은 그렇게 급진적으로 디자인될 수 있었다.

인터넷 정보공유지의 종획(enclosure)

인터넷에 돈으로 교환되어야 할 정보가 유통되기 시작하고 보안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인터넷의 p2p 구조는 변경되어야 했다. 1990년대 초중반이었다. 특히 1994년에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인터넷은 사이버(및 사이비) 공산주의의 유토피아에서 또 하나의 대량미디어로 급격히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애초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가 서버이자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었지만, 그런 직접적이고 평등한 생산 관계는 네트워크에 방화벽이 설치되고 유동 아이피(IP) 주소가 증가하고 네트워크주소변환(NAT, Network Address Translation)이 널리 사용되면서 서서히 파괴되어 갔다.

그리고 1990년대 말, 비대칭 대역폭의 방식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 거의 모든 집과 사무실의 인터넷 연결(모뎀이나 ISDN)은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것이 같은 속도를 유지하는 대칭 구조였다. 인터넷 연결 속도에 대한 디자인 자체도 정보의 생산과 소비를 구분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다운로드 속도에 비해 3배에서 8배까지 업로드 속도가 느려진 비대칭적 대역폭의 구조로 바뀌어갔다. 이는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서버보다는 클라이언트로, 정보의 생산자나 배급업자라기보다 그들이 제공하는 것을 받아 이용하는데 그치는 소비자로 격하된 것을 뜻했다. 이렇게 인터넷의 평등한 생산 관계의 형성은 서서히 대형 포털 사이트와 같은 중앙통제적인 매개를 정점으로 한 수직적 위계구조로 대체되었다.

다시 p2p 앱, 그리고 웹2.0 혹은 종획2.0

인터넷이 상업화되고 재개발되던 바로 그 때에 등장한 것이 바로 냅스터, 그누텔라, 자유넷의 p2p 앱들이었다. 인터넷 자체가 p2p 였지만 상업화되고 상품화된 정보가 대거 유통되면서 변경된 구조에서는 p2p를 일부러 구현해야 하는 프로그램들이 인터넷을 살려갔다. 이는 통제와 검열에 대한 저항이었고, 정보 상품화와 인터넷의 상업화에 대한 정보 공유지의 반격이기도 했다. 그 반격은 법정에서의 잇따른 패소와 각 p2p 앱들의 상업화(냅스터, 소리바다 등)에도 불구하고 “테러와의 전쟁”에 버금가는 “불법

복제와의 전쟁” 으로 오늘에까지 이어지는 동력이 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그렇게 소비자로만 붙들어두려는 지배적 기술과 공유지의 종획에 대항하여 문화생산물의 배급과 유통에 적극 나서는 일을 멈추지 않았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직접 제작한 문화생산물이나 온-오프라인에서 공동으로 만든 것들을 네트워크 세상에 풀어 놓았다.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에 다다르면서 무시할 수 없는 정보생산의 큰 줄기를 형성하자 또 한 편의 뉴미디어 문화 자본들은 이를 통해 돈벌이를 할 궁리를 했고, 유씨씨(UCC)나 웹2.0, 최근의 소셜 미디어라는 말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친숙한 (마케팅) 용어가 되었다.

Information = Politics / 373

P2P: Power to the People

JANKO RÖTTGERS

Sooner or later the Napster story will hit the big screen. Copyright-Catfight, orchestrated by Hollywood. It will be the story of Shawn Fanning, Napster's founder, painted in rich cinematic colours. Born as a result of quick sex at a birthday party, raised without a father, money or any strong family ties. Escaping into the world of cyberspace, setting out on a mission to change the way we consume music. We'll see him getting into the music industry's radar, fighting in court, mobilising the masses. He'll lose battle after battle, face showdowns with Metallica, and finally see his creation die, wrangled by lawyers. What a story.

Janko Röttgers, 2004, "P2P: Power to the People" [피투피: 민중에게 권력을],
Sarai Reader 2004: Crisis/Media. (pdf 파일 첫페이지)

그런데 이 때 뉴미디어 기업들이 이용자들의 p2p 공유를 막아서고 때려잡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돈벌이를 해볼 요량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중앙집중적 통제의 매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핵심 과제는 중앙집중적 통제가 작동되는 와중에도 사람들이 유즈넷이나 PC통신 때부터의 p2p 네트워크에서 보인 역동적인 참여와 공유의 생기를 계속 발산하도록 북돋는 것이었다. 웹2.0이 개방, 접근, 참여, 공유의 가치를 드높여도(진보분칠!) 문제없게 된 사정도 거기에 있다. 다른 무엇이 아닌 이용자 개개인의 세세한 정보와 행위의 흔적들이 개방, 접근, 참여, 공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방목과 같은 이용자들의 상호작용 과정이 그럼으로써 생산되는 가치를 전유할 수 있는 매개의 통제 구조에 붙들려 있도록 하는데 문제 없게 된 것이다.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라는 말 자체가 마치 우리가 직접 상호작용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발전시키는 것처럼 들리지만 말이다.

하여 웹2.0을 앞세운 지난 수 년간의 지배적 인터넷 문화는 1990년대 초중반에 벌어진 인터넷의 상업화에 대항하며 등장한 p2p의 정보 공유지(공공의 부)를 다시 사적으로 전유하는 뉴미디어 자본의 운동이 주도해왔다. 웹2.0은 그래서, 인터넷의 기술적이고 사회적인 발전의 2.0 세대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보 공유지에 대한 정보 자본의 두번째 종획의 흐름, 곧 종획2.0이다. 그렇게 저들의 사업이 우리의 문화가 되었다.

p2p, 민중에게 권력을(power 2 the people)!

그러니 온전한 의미의 탈중심적 분산 네트워크 체계를 구현하는 p2p는 이미 언제나 대안으로 존재해왔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는 p2p 방식으로 대체 가능하다. 구글닷컴은 검색에 있어서는 우리의 모든 검색 행위와 검색 결과를 수집, 축적, 분석하여 한데 모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광고주에 팔며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중앙집중적 검색 엔진의 검열로부터 자유로운 검색 기능을 제공할 목적의 ‘또래검색’ (peer search, peer-search.net)같은 것도 있다. 물론 구글만큼 검색 결과가 아직! 만족스럽지 않지만 우리의 참여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다. 사실상 우리의 참여와 지지와 지원에 힘입어 인터넷은 다시금 ‘공생공락의 도구’ 이자 자율적 공간이 되어왔다.

p2p 기술과 문화를 전유해 번창하고 있는 웹2.0이 이야기하는 거대한 감시와 통제와 검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다시 p2p다. 표현의 자유와 자율적인 공유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p2p 기술들은 그러나 대체로 주변화되어 있고 우리 관심의 바깥에 머물러 있다. 자본의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진 것들과 비교하면 이것들은 볼품 없고 쓰기에 어색하고 한글로도 안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내 친구들이 쓰는 것이 아니다. 민중의 기술은, 볼품 있고 쓰기에 이용자 친화적이고 한글로도 되어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만큼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구글닷컴이 잘 보여주듯, 표현의 자유와 자율적인 공유문화를 위한 기술에까지 자본의 투자가 있게 되면 그것은 곧 웹2.0과 같이 공유지를 살살이 종획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따라서 p2p와 같은 민중의 기술이 문화적으로 풀값을 하고 정치적으로도 그 의의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투자나 모험자본(최근에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풀뿌리 공동체의 집단적 협력의 투자와 ‘모험코뮌’ 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참고한 것

- 넬슨 미나(Nelson Minar), 마크 헤들룬드(Marc Hedlund), 2001, “Peer 네트워크: 역사

를 통해 고찰한 P2P 모델,” 〈차세대 인터넷 P2P〉, 한빛미디어.

- Dmytri Kleiner, Brian Wyrick, 2007, “InfoEnclosure 2.0” [정보중획2.0], Mute magazine – Culture and politics after the net.
- Janet Abbate, 2000, Inventing the Internet[인터넷 발명하기]. MIT Press.
- Janko Röttgers, 2004, “P2P: Power to the People” [피투피: 민중에게 권력을], Sarai Reader 2004: Crisis/Media. (<http://www.sarai.net/publications/readers/04-crisis-media/49janko.pdf>)

* 이 글은 인권오름 제220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HWP 우리 그만 만나

소재성 (우분투커뮤니티)

고통

hwp 문서 형식에 대해 문제를 느끼게 된 것은 공공기관의 문서를 읽으려고 할 때마다 느끼는 ‘불편함’ 때문이다. 사실 ‘불편함’이란 단어로 그 동안의 고통을 표현하기는 무리다. 리눅스 사용자가 자신이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자각을 할 때가 바로 hwp문서를 열어야 할 상황인데 그 이유는 hwp 문서를 열기 위해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hwp 문서 형식이 리눅스 운영체제 사용자나 매킨토시 사용자들에게 많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주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한 리눅스 사용자는 hwp 때문에 받은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리눅스 사용하면서 hwp 때문에 속터지는 일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hwp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시간 날린 거를 돈으로 환산하면 1천만원이 넘어갈 겁니다.” 피해를 본 상황을 정확한 액수로 산정한 그 분만의 계산 방식이 있을 것이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액수가 아닌 hwp 문서로 인해 그 분이 고통받은 고통의 크기다.

한글 읽기 위해 이렇게까지

리눅스 사용자는 hwp 문서를 보기 위해 지루하고 소모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윈도우용 한글 뷰어를 실행하기 위해 버추얼 박스를 열어 윈도우 운영체제를 실행한다든가 hwp파일을 볼 수 있도록 변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hwp문서 파일을 하나 하나 전송한 후 변환하여 읽는다든가 또는 리눅스용 한글 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든가 등의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

한컴오피스 한/글 2010 SE
 처음사용자용
 (SE버전 한글 처음사용자용입니다.)

판매가	277,200 원
주문수량	1 EA
상품코드	SEHG10001
제조사	한글과컴퓨터
공급사	한글과컴퓨터
배송비	무료 : 0 원 (0 원 이상 무료배송)

장바구니 위시리스트 바로구매 비회원구매

<한컴샵> <http://shop.hancom.co.kr/goods/content.go>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에서 리눅스용 한글이 판매되고 있지만 리눅스용 한글 2008은 우분투에서 설치하기가 까다롭다. 아시아눅스용이기 때문이고 설치한다고 해도 또다른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 비용인데 리눅스 기업용 한글의 경우 현재 판매가격이 214,500원 이다. 우분투 사용자는 구입한다고 해서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치하는 방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수고를 들여야 한다. 라이브러리 문제 때문이다. 공공기관에서 유통하는 문서 형식이 특정 기업의 독점 형식이기 때문에 그 문서를 보거나 편집하기 위해 고가의 문서 편집기를 구입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으로 설치방법을 찾아야 하는 등 힘든 작업을 거쳐야 한다.

물론 소프트웨어를 사지 않고 hwp 파일을 열람할 방법이 있다. 우체국에 가면 방문자들이 쓸 수 있는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에 보통 리눅스와 한글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만약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가까운 곳에 우체국이 있다면 이 내용은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또는 공공 도서관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대부분의 공공 도서관은 한글이 설치되어 있어 그 곳에서 hwp문서를 열람하면 된다. 게다가 이런 곳에서는 문서 수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왜 우리가 그런 고생을 해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이렇게 힘들게 한글 설치된 곳을 찾아다니며 열어봐야 할 만큼 hwp 문서 형식에 권위가 있는 것일까. 이런 불편함 때문에 리눅스 사용자는 hwp 형식을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두루 쓰고 배포하는 현실 자체에 문제 의식을 가지게 한다. 공공기관의 문서들이 독점 기업의 제품에서 독점 포맷으로 작성되어 배포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²⁰

20 가격 출처 . <http://shop.hancom.co.kr/goods/list.go?big=8&middle=1&small=1&ms=1>

무시할 수 없는 재구매 압력



리눅스용을 구매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눈치 챌 분들도 있겠지만 리눅스용 한글에 2008이라는 숫자가 붙어있고 그것은 2008년에 출시했다는 의미이다. 윈도우용은 2010SE까지 나왔다. 2010에서 만들어진 문서가 2008에서 제대로 보일지 의문이다. 새로 출시한 한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새버전으로 만들어진 문서가 많아지면 문서의 호환성을 고려해 최신 한글 제품을 구매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이런 고충도 간과해선 안 된다.²¹

hwp 문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다수가 이 점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다시 강조하고 싶다. 앞으로 한글이 계속 출시될 것이고 기능 개선도 이뤄질 것이다. 그렇다면 전 버전을 구매하였던 사용자는 새 제품을 언젠가는 재구매해야 할 때가 온다. 문서의 호환성을 위해서다. 다시 말해서 최신 한글에서 작성된 문서는 예전 한글 제품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아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재구매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앞장서 독점화 조장

개방형 문서를 사용하여 국민의 공공문서 열람에 우호적 환경 조성을 도모해야 할 공공기관이 그와는 반대로 특정 기업의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문서의 공적 이용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것이 정당인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국민과 기업들에 경제적 부담은 물론 정신적 부담을 주는 특정 회사의 문서 형식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 2010년 6월 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의 주제는 ‘국내 공공기관 국제문서표준 채택 현황 및 필요성’ 이었다. 이날 발표자로 참석했던 김도현 교수는 그가 제출한 발표자료에 이렇게 적었다. “공공기관이 아래아 한글 포맷으로 문서를 배포하는 것은 국가가 앞장서서 특정 산업의 독점화를 조장하고 있는 격” 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이어서 그는 그 원인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무지했기 때문이고 그들이 이 세상에 다양한 소프트웨어, 다양한 운영체제, 그리고 다양한 문서포맷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일 것” 이라고 했다.²²

21 새 제품 출처 . <http://shop.hancom.co.kr/goods/list.go?big=8&middle=1&small=1&ms=1>

22 [간담회] 공공기관의 개방형표준문서 채택 현황 및 해외 동향 <http://www.nars.go.kr/publication/boardView?>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가 앞장서서 특정 산업의 독점화를 조장는 격’이라는 그의 주장이다. 이 주장은 한국 인터넷 환경에 만연한 Active-X 문제를 거론할 때에도 매번 제기된다. 우리나라 웹 환경은 아직도 Active-X 플러그인을 필수로 요구하는 곳이 많다. 이는 인터넷 사용자가 윈도우 운영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굴레로 작용하고 있다. Active-X는 기본적으로 익스플로러에서 구동되고 익스플로러는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만 원활히 돌아간다.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독점을 고착화하는 기술에 대해 개선의 목소리를 내는 측에서는 특정 기술의 무비판적 확산이 결국 특정 제품의 강매 효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강매와 독점 산업화 조장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 주장은 과장된 것일까.

공공기관이 앞장서 독점화 조장. 사례1

한 사례를 들어보겠다. 2009년 국방부에서 한컴 오피스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가 났다. 그 기사의 제목에서부터 호전성이 물씬 풍기는데 기사의 제목은 “군 행정고지 ‘한컴오피스’ 진격”이었다. 국방부에서 한컴 오피스를 전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의아해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군에선 이미 한컴 제품을 써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사를 보면 한글이 아닌 한컴오피스란 사실을 알게된다. 전면적으로 한컴 오피스에 세금을 쓰겠다는 것이다. 우린 어쩌면 hwp에서 더 나아가 cell이나 show와 같은 신종 확장자와 불편한 만남을 하게될지도 모른다. cell 은 한컴오피스 엑셀 확장자 이름이고 show 는 프리젠테이션 확장자다. 국방부에서 이런 확장자로 된 문서를 무분별하게 배포하면 예하 기관이나 관련 민간업체는 어떻게 할까. 기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각 군이 한컴 오피스를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파급효과는 국방부가 사용하는 것에 4~5배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²³

상위 단체에서 특정 제품을 일괄적으로 계약하여 사용해버리면 그 밑의 단위 조직은 상위 단체의 행동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당연히 정치력이나 권력의 힘관계나 기타 여러 부분에서 약자의 처지인 단위 조직은 상위 단체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게 쉽지 않다. 위 기사에서도 ‘파급효과’ 라는 단어로 이 점을 정확히 지적했으며 그 지적은 수긍할만 하다. 물론 이러한 일이 개인단체나 민간기업에서 일어났다면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국방부는 민간기업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그리고 국방부 문서는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개방되지 않은 기술로 만든 독점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고려해봐야 한다. 한글이 오픈소스가 아니기에 이런 위험성에 대해선 열린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div = 12 & type = 02 & invest_id = 000000011170 & baseURL = /publication/board?div = 12 & type = 02
 23 군 행정고지 ‘한컴오피스’ 진격 <http://www.etnews.com/news/detail.html?id=200906160245>

공공기관이 앞장서 독점화 조장. 사례2

혹시 국방부 이야기라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특정 산업의 독점화를 조장하고 있는 격’에 대해 실제 사례를 들어 생생하게 알아보겠다. 이 이야기는 우분투포럼의 한 회원이 올린 글로써 많은 분들의 심금을 울린 사건이다. 너무 애절한 사연이라 그대로 인용해보도록 한다. ‘인고의 3천 페이지’라고 이름을 붙여본다.

“여담으로 한때 보고서 두권(영문&한글) 합쳐서 약 3천 페이지 정도되는 보고서를 연구관련 기관에 제출해야할때가 있었죠. 2백명이 넘는 사람들의 문서를 취합한 것이라 대부분 사람들이 사용한 마소 docx 2010 파일로 작성했었죠. 근데, 제출 마감 하루 전에서야 hwp파일만 제출 가능하다는걸 알았죠. 다들 설마, 설마 했었습니다. 그것도 hwp 2010버전도 아닌 2007버전만 가능하더군요. 수천개의 그림번호, 표번호, 수식, 들여쓰기, 문단 등 hwp로 변환하면서 깨져버린 것들이 너무도 많아서 다들 좌절했었고, 우선 엉망이된 파일로 보고서 제출 시스템에 올리고 따로 pdf로 관계자에게 이메일로 보냈던걸로 기억합니다. 다들 손 놓고 있었을때 한분이 하나하나 수정하기 시작해서 거의 3달에 걸쳐서 한글 2007 버전으로 만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참 이래저래 시간 낭비, 돈 낭비였던 듯 싶네요. 아직도 이해가 안되는것은 영문버전은 외국 연구자들에게 보여지는것인데 왜 아래한글 서식이었는지, 참.. _스_;;” 여기까지다.²⁴

위 글에서 정부는 한글 2007 문서만 허용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그 사실을 몰랐던 제출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국제 표준으로 등록된 OOXML 포맷 문서로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제출자는 국제 표준으로 승인된 문서 형식으로 만들었지만 정부기관은 독점 기업 포맷을 요구한 것이다. 요즘도 한글 2007 문서 형식만 받겠다고 공지한 정부 주최 공모가 많다.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려면 한글을 구입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장기적 접근 가능성

이 외에도 공공기관이 한 기업의 독점 제품으로 문서를 작성했을 때의 위험은 또 있다. 그건 바로 장기적 접근성의 불확실이다.

자료가 잘 보존되어 그 자료가 수천 년이 지난 뒤에도 남게 된다면 후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그런

²⁴ 출처 - 우분투포럼 marsx1 <http://ubuntu.or.kr/viewtopic.php?p=93704&sid=4768fbe4f433fbdde9628473cc...>

자료를 통해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나 생활 방식을 연구할 수 있고 역사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장기적 접근은 매우 중요. 사례1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책들이 이런 범주에 속하는데 실제 예를 들어본다. 중국 역사서인 ‘사기’, 고대 그리스 역사서인 ‘소아시아 원정기’ 등은 2000년 전에 쓰여진 문헌이다. 이러한 기록이 수 천년이 넘도록 읽히기 위해선 먼저 기록할 도구가 있어야 하고 기록에 사용되는 언어는 후세에도 해독될 수 있는 범용적인 언어여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기록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결국 역사적 사실은 사라져버리거나 구전되어 전설로만 남게 된다.

장기적 접근은 매우 중요. 사례2

드루이드의 사례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드루이드’는 다신교 성직자를 가리키는데 기원후 1세기 까지 있었다. 이들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지식은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 였다.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지식은 결국 사라지게 되는데 실제로 드루이드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게임속 인물로만 등장한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다. 전설이 돼버린 것이다. 이런 사례가 전자문서에도 나오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크다.

장기적 접근은 매우 중요. 사례3

독점 포맷의 수명은 그 기업의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 크게보면 그 기업이 사업 전략을 바꿨을 때와 해당 기업이 도산했을 때로 나눌수가 있다. 혹시 GUL이란 포맷을 들어본 적 있는가. 지금도 인터넷에 간간히 이 문서를 어떻게 봐야 하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문서는 S사에서 만든 문서작성기에서만 볼수가 있다. 그 문서작성기는 바로 훈민정음. 1992년 한글을 대항하여 만든 문서작성기인데 지금은 해당기업 내부에서만 쓰고 있다고 전해진다.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기업 내부 외에서 쓰는 곳이 없으니 오히려 보안상 안전하다는 말까지 떠돈다. 이것이 2000년전 ‘드루이드’ 사례와 다른가.

hwp 장기적 접근 불확실

한컴은 어떤가. 지금은 hwp 확장자로 된 문서를 지속적으로 보완 및 기능 추가하여 발전시키지만 그 계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오직 그 회사의 의지에 달렸다. 그리고 이 회사가 수백년을 넘어 수 천년 이후까지 지속될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이 회사의 존속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훈민정음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독점 기술로 만들어진 문서일 경우 그 문서 형식을 개발한 회사에서 지원을 소극적으로 한다든가 어떠한 사정으로 그 회사가 망하면 기존의 문서를 열람하는 것은 포기하게 될 것이다. 독점 포맷을 잘 보여주는 제품은 결국 그 포맷을 만든 회사의 제품이기 때문이다. 타 업체에서 뷰어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원본처럼 충분히 재현해 주긴 힘들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사실은 아니지만 이미 한컴의 주인은 8번 바뀌었다. 대주주가 바뀌었다는 의미다. 현재 대주주는 ‘소프트포럼’이라는 기업이다. 지난해 9월 한컴 주식 28% 670억에 인수하여 대주주가 되었다. 대주주의 성향에 따라 인수한 기업의 배당금만 챙겨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는 다르게 좀더 적극적으로 기업의 전략까지 깊게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제는 대주주의 성향까지 염려해야 할 상황이다.

한컴이 언제까지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 불확실

해외 사례를 잠시 들여보자. 이 사례는 ‘우리공장은 소설이다’라는 프랑스 제약회사의 일대기를 그린 책에 기록된 내용이다. 이 소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쓰여졌다. 이 책의 후반부에 프랑스 제약회사가 다른 국가의 대자본에게 인수당하는 장면이 나온다. 인수된 후 제약회사시제품 약들도 통폐합 되는데 환자들에게 이로운 약이더라도 매출액이 높지 않은 약의 경우 개발을 중지시키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여기서 매출액이 높지 않다는 것은 5억달러, 우리돈으로 6천억이상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약 판매를 중지하면 당장 그 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대체 제품을 비싼 가격에 사거나 때로는 경제적 이유로 약의 복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대주주의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예다. 한컴이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한 기업의 독점 기술에 매몰되었을 경우 어떤 위험들이 닥치게 되는지 역사에서 배울 수는 없는 없는 것인가. 한국에서만 유통되는 독점 문서 포맷은 이미 21세기 ‘드루이드’가 된 것인지 모른다.

헤겔의 말을 빌려본다.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실은, 우리는 결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 말이 현실이 되지 않아야 한다.

‘한국 기업 평균 수명’에 대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8만개 기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10.4세라고 한다. 한컴이 1990년 설립이 되었으니 평균 수명은 이미 지났으니 앞으로의 한컴 수명은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 하늘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아닐까 바랄뿐이다.

이에 대하여 한컴은 이렇게 답하는 모양이다. 한컴측은 “매출의 50%이상이 민간기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한컴 매출이 공공기관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우린 알고 있다. 이미 위에서 국방부 사례에서도 봤던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사용을 해주니 그와 연관된 민간기업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닌가? 과연 공공기관에서 한컴 제품을 쓰지 않는다면 어떤 민간기업에서 한컴 제품을 구매해줄 것이고 그런 회사가 얼마나 될까?²⁵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http://www.nars.go.kr>

국회입법조사처의 개방형 문서 형식 요구

이런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하는 곳이 있다. 바로 ‘국회입법조사처’. 작년 한 해에만 간담회 주최와 보고서 발간 등 조사된 내용만으로도 세 번의 공식 활동이 있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자면 이렇다. ‘국민의 공공재인 공공문서는 개방성과 상호호환성이 필수이

25 [주요 국산SW SWOT 분석] © 한글과컴퓨터 <http://shimsky.delight.net/51>

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지원 및 국제적인 표준화 기구에서 승인되어 널리 사용되는 문서 형식을 충족시켜야 함은 물론이고 공공문서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열람할 수 있어야 하기에 현재의 기술과 도구에 종속되지 않는 방향이어야 한다.’ 라고 요약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공공문서 형식의 현황에 대해 특정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재 작성된 문서가 미래에도 처리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전적으로 해당 업체에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며 문서주권 확보를 위해 개방된 형식을 사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게다가 공공부문에서 특정 업체의 문서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원활한 소통에 애로를 초래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점에 대해선 이미 위에서 언급한 사례와 같다. 이어 우리나라와 국제 비교를 통해 국제적으로 XML 기반의 형식을 채택하고 있는 추세와 달리, 우리는 바이너리 형식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XML은 쉽게 설명하자면 태그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방식인데, HTML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96년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에서 제안했다. 이 기술을 응용하여 만들어진 ODF 나 OOXML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다.

왜 우리는 XML 형식의 문서를 공공부문에 사용하지 않을까.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가 현재 공공문서 작성에 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합리적이고 기술 중립적인 공공문서의 형식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외사례

잠시 국외 사례를 알아보자. 미국은 2009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공공문서에 개방된 형식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밝혔고 메사추세츠주는 이미 2005년에 ODF 문서 형식을 공공문서에 사용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 메사추세츠주는 독점적 라이선스에 공공문서가 종속되면 장래에 읽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형식을 공공문서에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7년 8월에는 OpenXML도 개방된 형식에 포함하게 된다. 뉴욕주의 경우 문서뿐 아니라 IT정책 전반에 개방형 표준을 선택할 것을 천명하고 ODF와 OOXML을 개방형 문서로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유럽 각 정부도 적극적으로 개방형 문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다. 영국은 2009년 모든 정부 솔루션에 개방형 표준을 준수하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ODF 뿐만 아니라 PDF와 OOXML의 사용도 지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XML기반의 문서 형식 가운데 ISO에 의해 표준화된 규격을 사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특히 ODF와 OOXML 모두 관찰 등급을 부여하였는데 그 이유는 규격에 부합할 구현이 더 많이 출현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2008년 3월에 발간된 전자정부를 위한 표준과 아키텍처 참조문서에서 텍스트 문서는 ODF 1.0을 추천하며, 나머지 모든 경우에 있어서 ODF와 OOXML에 관찰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 2006년에 ODF를 개방형 표준으로 예시했고 OOXML도 조만간 ISO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여 포함시켰다.

스위스는 2010년 ODF와 OOXML을 추천했으며, 노르웨이는 2010년 기준으로 ODF는 의무, OOXML은 관찰 표준으로 분류되어 있다. 스웨덴의 경우 전자정부를 위한 지침에서 특정 형식을 지정하지는 않고 개방된 표준에 최우선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관련법 알아보기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국가의 역할은 공공문서가 한 기업의 독점 형식이 아닌 개방형 문서 형식으로 작성되도록 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문서 표준의 변화를 추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내용은 이미 법으로까지 재정되어 있는데 바로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특히 전자기록물 보존에 관한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법의 제46조에는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은 전자기록물을 주기적으로 장기보존포맷을 변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그 이유로 진본성·무결성·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이미 법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영구 기록물은 오랜 기간 이용이 가능해야 하기에 포맷이 어떤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주기적 장기보존포맷을 변환하도록 정해둔 것이다. 독점 포맷은 이 요건을 장기적으로 충족하기 힘들지만 개방형 문서의 경우 이런 요건을 충족한다. 특히 ODF를 지원하는 원천 기술까지 개방된 문서도구가 존재하기에 개방형 문서 표준으로 정하기에 손색이 없다. 이미 소스가 공개된 제품이 있다는 말이다.

한글의 파일 형식 공개는 정말 공개인가

혹시 한컴에서 문서 형식을 공개한 것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것 같다. 작년 6월 29일 한글에서

hwp 문서 파일 형식을 공개했다. 총 178쪽으로 된 pdf 문서에는 한글 2002 이후 제품에서 사용되는 한글 문서 파일 형식 5.0을 비롯하여 한글 3.x 문서 파일 형식과 hwpml 한글 개방형 문서 형식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이것이 나온 후 조만간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리눅스용 뷰어도 나오지 않을까 큰 기대를 걸었지만 지금은 그 기대를 접은 상태다.²⁶

hwp 문서 파일 공개와 관련된 글을 찾아 읽을 수록 실망감은 커지는데 잠시 우분투포럼에 올라온 글을 언급하고자 한다. “포맷 공개요? 불완전 공개입니다. hwp 파일을 역공학 해가면서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고요. 배포용 문서 포맷, 암호화, hwp 내부 글자 인코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hwp 마이너 버전 별로 다른 점들이 있을텐데 그것도 공개되지 않았고요.”²⁷

특히 이 글을 쓴 분은 현재 공개된 hwp 파일 형식을 바탕으로 hwp뷰어를 만들고 있는 분이다. 이 분의 이야기를 통해 한글의 포맷 공개는 결국 불완전 공개임을 알 수가 있다. hwp가 공개되었다고 하여 바로 제품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한 분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한컴 관계자의 말을 통해서 재차 확인이 가능하다.

양왕성 상무 설명을 들어보자. “공공시장은 정부기관의 요청들을 짧은 시간 안에 세밀한 부분까지 맞춰줘야 하는 곳입니다. 한컴은 10년 동안 그런 요구들을 맞춰가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한컴의 진짜 경쟁력인 셈이죠. 만약 MS가 HWP 문서를 잘 읽고 만들 수 있는 기능을 MS 워드에 넣어 공공시장을 공략한다고 칩시다. 한컴이 지난 10년 동안 해온 작업이나 노하우를 MS가 단기간에 따라잡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²⁸

위 글은 이렇게 이해가 된다. 한글 문서 형식 공개는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짧은 시간안에 세밀하게 구현하는 것은 어렵고 결국 공개된 형식에 가장 잘 맞는 제품은 앞으로도 한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HWP 형식 공개의 이유는 공개가 되어도 한컴에 손해볼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사실 한컴이 손해를 보든지 안 보든지 여부는 관심사가 아니다. 공개된 자료를 통해 리눅스 사용자가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음을 우린 알게되었다.

26 출처 - 한글 문서 형식 공개 http://www.haansoft.com/notice.noticeView.do?targetRow=1¬ice_seqno=33

27 출처 - <http://ubuntu.or.kr/viewtopic.php?p=93686#p93686>

28 블로터 2010. 06. 30 <http://www.bloter.net/archives/34064>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우린 공공문서가 특정 업체의 독점 기술이 아닌 개방형 기술과 도구로 작성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 살펴봤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을 분석하고 불만을 표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불편함을 개선하거나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강제할 구체적 행동이다. 단순히 다 소꿉하게 요구하거나 변화가 올 때까지 수동적으로 불평하는 수준을 넘어 대범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개방형 문서를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미래 지향적이면서 도덕적이며 공동체에 이익이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에 동의한다면 공공부문에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hwp가 더이상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급진적인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점진적인 변화를 만들기위한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급진적인가 점진적인가에 대한 선택이 아니고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목표 설립으로 보인다. 총체적 관점을 가지지 못한 채라면 점진적이든 급진적이든 여러 조치들이 서로 모순된 목적을 두고 움직이는 일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오픈소스에 관심있거나 이미 관련되어 일을 하고 있거나 또는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모임 안에서 최종의 목표를 ‘공기업 IT 소프트웨어 전반에 오픈소스화’로 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미래 지향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잠정적 목표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든 고려해야 할 가치들이 너무 많고, 가능한 대안들도 너무 많으며, 알 길이 없는 미래 의 불확실한 결과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기업 IT 소프트웨어 전반에 오픈소스화’를 잠정적 목표라고 해두자.²⁹

이것이 동의된다면 우리가 할 것은 좀 더 명확해진다. 공공기관에서 문서 유통은 반드시 개방형 포맷으로 해야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만드는 도구 역시 개방형 문서 저작도구로 바뀌어야 하며우린 그것을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 주장해야 한다. IT 업종의 특성상 야근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행동보다 온라인 상의 요구를 할 수도 있으며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짝을 지어 오프라인 상에서 행동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수로 움직이는 것인데 한 사람의 의견은 무시될 수도 있지만 복수의 의견은 무시되기 힘들며 또한 행동하는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격려를 주며 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음은 물론 그런 행동이 진정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29 출처 - 유토피아, 점진주의, 에른스트 비그포르스의 잠정적 유토피아의 개념.pdf

국외사례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 국외에선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그것은 다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키기에 충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과 스위스의 움직임이 매우 큰 시사점을 준다. 시사큐비즘이란 블로그를 운영하는 최재천씨의 글을 보자. 그는 “유럽 사람들은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정당을 만들고 정당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적 방법’ 을 선택하기도 한다” 고 말한다. 또 그는 최근의 독일 해적당과 스위스 ‘파워포인트 반대’ 를 예로 들며 “이런 정당 만들기가 유럽에서는 흔히 있는 정치 참여 예” 라고 말한다.³⁰

유럽의 인터넷을 사용하는 세대들이 우리보다 과감하고 창의적이고 좀더 적극적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 해적당은 과도하게 특정 소수 기업의 특허를 보호하도록 유리하게 만들어진 특허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는데 지난 9월 18일 치러진 베를린 의회선거에서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속에 무려 전체 투표의 8.9%를 획득했다. 특히 해적당 발생지라고 부를 수있는 스웨덴에서 창당 3년 만인 2009년에 유럽의회 선거에서 7.13%를 얻어 원내에 진출하였다.³¹

그러면 또 다른 스위스의 정당 움직임인 ‘파워 포인트 반대’ 는 무엇일까. 블로그의 글을 보자. “14년 경력의 스피치 강사 메시어스 포엠은 평소 ‘칭중을 설득하는 것은 ‘사실’ 이지, 파워포인트 같은 기술적인 도구가 아니다’ 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이 생각을 나누기 위해 지난 5월 ‘파워포인트 반대당(APPP)’ 을 창당했다. 창당 이유는 ‘파워포인트 작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스위스 경제와 산업, 교육과 연구 분야에 막대한 손실을 준다’ 는 것.” 이어 “포엠은 파워포인트 사용을 금지하는 국민투표 실시, 큰 종이에 직접 써서 설명하는 프리젠테이션 교육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10월 스위스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다.” 라고 전한다.

이렇게 정치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적극적이고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데 IT 업계에 관련된 각종 이슈들도 결국 법 제도의 문제이고 그것을 바꾸는 것이 결국 우리의 해야 할 일들과 결합될 사안이기 때문이다. 덕지 덕지 붙은 Active-X나 익스플로러에 최적화 된 수 많은 사이트들은 리눅스 운영체제 사용자는 물론이고 기타 다양한 브라우저 사용자에게 고통을 주며 이것은 사회적 비용이 된다. 해결 방법은 결국 이것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촘촘하게 엮여 힘을 모으는 것을 가능하게 할 모임체가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그 모임체는

30 <http://blog.ohmynews.com/cjc4u/popup/print?id=386933>

31 출처 - 한겨레 (시론) 유럽 해적당과 안철수 현상/이종오

반드시 정치적 힘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 변화는 제도를 바꾸는 문제이고 그 제도는 정치력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을 바꾸지 않고 단순히 당위성과 선의에 의지하여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달성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서로의 힘을 소모하게 만들어 실망감을 안기게 된다.

결말

우리는 이미 체험했다. 그 체험이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선 실질적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4월 여러 사람이 Daum 사측에 우분투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결국 노틸러스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사소한 변화가 있었다.³²

또한 단일 브라우저와 특정 운영체제에서만 가능하던 은행 업무가 현재는 다수 은행이 동참하여 오픈뱅킹 기술을 도입하게 된 것도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픈뱅킹화가 되기 전에는 우리의 그런 요구들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대표적인 의견이 은행은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돈이 되지 않는 리눅스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허황된 일이란 것이었다. 그럴듯한 주장이지만 그 의견이 통찰력이 없었음을 우리 모두 목격하고 있다. 현재 다수의 은행이 오픈뱅킹을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한 개인의 법정 싸움이 변화 요구의 동력을 결집시키는 데 큰 역할이 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요구하고 행동하면 결국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원하는 것의 실현이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행동을 시작하길 제안한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욕구에서 출발하길 희망한다. 자신이 원하는 행동할 때 가장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동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동의 할 만한 잠정적 최종 목표를 만들고 그 범주와 충돌되지 않는 모든 소모임을 만들기를 희망한다. 소모임속에서 다양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서로와 그 내용을 공유하며 그렇게 만들어진 축적된 에너지가 결국 우리의 삶을 좀 더 자유롭게 해주고, 공동체에 이득을 주며, 서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봤을 때 hwp 파일 대신 개방형 형식 사용을 공공기간에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많은 미래들 중 한 가지일 뿐이다.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내고 점차 자신감과 용기가 IT 관련 사람들에게 축적되며 그러한 경험들이 계속 전해지길 바란다. 우리의 생각이 서로 달라도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좀더 존중되는 것은 물론 스스로가 기꺼이 협동하고 펼쳐 일어설 수 있길 바란다. 우린 21C 드루

32 다음 클라우드 요청 메일의 답변이 왔습니다. 2011/04/26 화 12:11 am [http://www.ubuntu.or.kr/viewtopic.php?](http://www.ubuntu.or.kr/viewtopic.php?f=4&t=16816)

f=4&t=16816

이드가 되어선 안 되니까 말이다.

* 이 글은 2011년 10월 19일, 오픈소스 포럼 ‘웹/문서 표준 준수의 필요성과 오픈웹 캠페인 방안’ 발제문입니다.

전자주민증과 정보인권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I.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해 9월 전자주민증 도입을 내용으로 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³³을 발의하였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전자주민카드 계획이 백지화된 이후로 12년 만에 국가신분증의 전자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여러 차례 제안된 수정안들을 검토하며 이 법안을 심사 중이다.³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자주민증의 문제는 미완의 민주주의 문제이기도 하다. 멀리는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의 역사 속에서, 가까이는 군사독재정권 치하에서 도입된 주민등록제도의 반민주성과 인권침해 문제가 현재까지 시정 없이 계속되어 왔다.³⁵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는 복지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국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의해 도입되었다는 데에 그 특이성이 있다(조화순, 2005). 주민등록제도와 정보 기술의 결합은 시민권을 압도하는 국가와 기업의 권한을 확대시키고 있다.

1998년 전자주민카드는,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시민의 힘으로, 당시로서는 상당히 선진적이었던 ‘프라이버시’의 권리 프레임을 성공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저지되었다(임현만, 2005). 전

33 2010. 9. 20. 의안번호 9418.

34 개정안에 대한 이 수정안들의 법적 지위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정부 발의 법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수정 법률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전자주민증 관련해서는 2011. 7. 현재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최소 2차례의 수정안이 제안되었다(행정안전부, 2010c; 2011b). 이 글은 공개된 법안 뿐 아니라 수정안의 내용도 함께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개정안과 수정안 조문 대비표(행정안전부, 2011e)는 일반에 공개된 바 없기에 별첨하였다.

35 “국가권력의 민주적 성립이나 법적 통제가 불충분하였던 박정희정권 하에서 추진된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 그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헌법상 거의 다루어지지 못한 상태 하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정보사회에서 ‘새로운’ 기본권침해의 중요수단으로 부각, 활용되고 있다”(김일환, 2005; 김주영, 2011 참조).

자주민카드와 관련한 당시 논의에는 카드가 정보주체인 개인의 이익에 반하여 개인의 정보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것이라는 인식과 국가와 조직의 권력을 증대시켜 국민의 참여나 대의제적인 정부보다는 기술에 의하여 도움을 받는 관료제적 지배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근간에 있었다(조화순, 2005). 그러나 정권 교체 속에서도 주민등록제도의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은 1999년 십이지문 강제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소원과 대중운동으로 맥을 잇는 듯하였으나, 2005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대중운동도 잦아들었다.

그래서 ‘돌아온 전자주민증’ 을 바라보는 심경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미루어 두었던 질문에 답해야 한다. 국가신분증이란 국민에게 무엇인가. 국민은 국가신분증 제도를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2005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고 기왕에 국가신분증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잡아왔으니, 선택지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나마 우리가 건질 수 있는 이득은 국가신분증의 위·변조와 유출의 위험성을 방지한다는 실용적 관점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정보인권은 이러한 논쟁에서 어떠한 관점을 제시해야 하는가. 이미 3천 5백만 개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 한국은 전자주민증을 실시하면서 충분히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이 글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전자주민증의 쟁점사항을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더불어 찾아보고자 한다.

II. 정보인권의 내용

1. 정보인권 개념의 유래

2003년 유엔이 개최하고 국제통신연합(ITU)이 주최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³⁶ 전후로 국제적으로 ‘정보 사회의 인권’의 의미를 밝히는 시도가 활발히 시도되어 왔고, 정보인권(Human Rights in the Digital Age)은 현대 정보화 사회 혹은 디지털 사회에서 인류 문명 발달의 핵심인 의사소통의 자유를 보장하는 4세대 인권으로 규정되어 왔다. 학계에서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내에서 개인 및 사회의 정보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서 정보인권(citizens' right to information)에 대한 고찰이 있어 온 이래, ‘정보가 수집·가공·유통·활용되는 과정과 그 결과로

36 <http://www.itu.int/wsis>

얻어진 정보가치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고 이를 통해 삶의 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정보인권으로 정의한다(이민영, 2010). 혹은, 헌법상 정보 질서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보의 자유' (공적 정보의 자유)와 '정보 프라이버시' (사적 정보의 보호)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정보유통에 대한 통제력을 지니게 되는 권리라고 정보인권을 정의하기도 한다(이인호, 2009). 한국 사회에서 이 용어는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쟁 이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중적으로 알려져 왔다.³⁷

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내용

헌법재판소는 2005년 지문날인 제도에 대한 결정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고 설시한 바 있다.³⁸

비록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주민등록법상 지문날인 제도와 경찰청장이 지문 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으나, 결정문은 정보인권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서술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컴퓨터를 통한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진행되면서] 오늘날 현대사회는 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생활상의 각종 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타인의 수중에서 무단 대로 집적되고 이용 또는 공개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처하게 되었고,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에 있어서의 국가적 역량의 강화로 국가의 개인에 대한 감시능력이 현격히 증대되어 국가가 개인의 일상사를 낱알이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경고하며,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 하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는 것은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장치”라고 지적하였다.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에게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보장하고 있으며, 현대적인 정보처리기술의 조건 아래서는 국가 등 공권력에 의한 개인정보의 무제한적 수집, 저장, 이용 및 교부에 대하여 개인을 보호할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

37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의미에 특화하여 ‘정보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8 헌재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법률유보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해 엄격히 심사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대상 사건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개인정보의 보관·전산화·이용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전자주민카드사업이 보류되었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전자주민증 역시 이러한 사유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헌법재판소가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일반문서에 의한 개인정보의 경우에 비하여 기본권침해의 우려가 훨씬 크다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사실이다.³⁹ 즉 기존에 육안 식별 등의 방식에 의존하던 주민등록증 정보의 처리가 전산화되어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은 그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더욱 중대해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지문 정보를 범죄수사활동, 대형사건사고나 변사자가 발생한 경우의 신원확인,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 방지 등 각종 신원확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였을 때의 공익이 그로 인한 정보주체의 불이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보았다. 즉 지문 정보를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업적인 식별용으로 널리 사용하고 국가가 그러한 계기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면, 기본권 침해성은 커질 수 있다. 특히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희,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의견에서는 지문 정보의 민감성을 다음과 같이 힘주어 지적하였다. 첫째, 지문은 개인정보의 연결자로 사용될 수 있다. 국가나 기업, 개인이 지문 정보를 집적하고, 이를 통하여 개인의 성향이나 취미, 소비행태, 병력 등 사생활을 엿볼 수 있으며, 그 개인에 대한 평가, 분석을 함부로 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둘째, 지문은 개인의 신체의 일부분으로 언제 어디서나 남겨두고 다니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기업, 타인이 그 개인의 행위나 사생활을 추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가능성이 알려지거나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 개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제약을 가져오는 등 개인의 인격과 자유는 심히 위축될 여지가 있다. 때문에 헌법상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지문 정보의 수집, 보관, 활용에 대하여 그 목적·대상·범위·기한 등의 요건을 엄격하게 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결국, 지문 정보에 대한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은 지문 정보의 고유성과 동일성으로 인한 식별성과 더불어, 추적가능성 때문이다. 지문 정보의 민감성이란, 뒤에서 살펴볼 정부의 주장대로, 육안으로 지문 정보를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39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그 그림자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 특히 컴퓨터를 통한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용이 시공에 구애됨이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정보처리의 자동화와 정보파일의 결합을 통하여 여러 기관간의 정보교환이 쉬워짐에 따라 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모든 기관이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위 결정문)

컴퓨터나 전산망 등을 통한 개인사생활감시와 개인정보침해는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얼마만큼 침해되고 있는지를 전혀 또는 거의 모르고 있다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구제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김일환, 2005). 무엇보다 오늘날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를 위한 공공정보시스템은 갈수록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는 거대 기술 구조물이기 때문에, 도입 이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중단시키기가 어렵다. 따라서 그 침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영향평가를 제도화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⁴⁰ 이러한 영향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개인정보의 보관·전산화·이용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이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기술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원칙⁴¹의 구현이 보장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특히 공공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있어서는 목적구속원칙을 유념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 중 목적구속원칙은 정보처리목적을 확정하고 다른 한편은 정보처리의 범위를 한정한다. 필요한 최소한도로 사전에 명백하게 규정된 목적을 위한 정보처리만이 허용된다(김일환, 2005).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 단계에서부터 그 목적을 명확히 한정하고,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에 있어서 목적 내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도록 한정하며, 목적 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기술적 조치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⁴²

전자신분증에 사용되는 IC칩은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확장성이 있다는 점에서 목적구속의 원칙에 의거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우리의 전자주민증이 이런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40 개인정보보호법(2011. 9. 30 시행) 제33 조.

41 OECD 8원칙 등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은 기본권보장의 체계에서 볼 때 비례원칙의 구체화 내지 비례원칙의 파생원칙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기초로 하여 자기정보통제권의 제한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특수한 요청들을 상정해본다면, 1) 목적구속의 원칙 2) 수집제한의 원칙 3) 정확성·안전성의 원칙 4) 정보분리의 원칙 5) 시스템공개 원칙 6) 익명성의 원칙을 들 수 있다(권건보, 2005); 그밖에 개인정보보호법 제3 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였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2 그런 의미에서 지난 9월 30 일 발효한 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5 조 제1 항 제1 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동항 제2 호)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동항 제3 호)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이 법 제정으로 폐지된 (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동법 제5 조)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던 것에서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현재의 결정에서 경찰청장이 지문 정보를 보관하는 행위의 법적 근거로 간주된 이래로, 경찰과 정부의 정보시스템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구축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로 사용되어 왔었다.

여 회의적으로 평가한다.

III. 전자주민증의 도입 내용

1. 도입의 필요성

정부는 전자주민증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0; 행정안전부, 2011c).

첫째, 현 주민등록증 경신 후 10년이 지나 주민등록증의 경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사진이 낡고 용모변화가 심하여 생긴 신분확인업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새주소 도입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교체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새로운 수록사항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먼저, 용모변경자 신원확인의 어려움과 주기적으로 일제경신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도입한다. 또한, 최근 계속되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대책으로서, 증 발행번호를 식별번호로 도입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한다(행정안전부, 2011f; 2011g).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I-PIN) 사용을 권장 내지 의무화하려는 정부의 방침과 유사하게, 오프라인에서는 증 발행번호로써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자는 것이다. 증 발행번호는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거나 유추할 수 없도록 생성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와 다르다.

둘째,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록사항의 일부를 전자화할 필요가 있다. 현 주민등록증의 표면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증 표면에서 삭제하고 전자 IC칩에만 수록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때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열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번호 입력 또는 지문 인식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열람에 대한 본인 동의를 득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 2010c).

셋째,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변조에 취약한 기존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대체한 전자주민증의 도입이 필요하다. IC칩에는 주민등록번호, 지문, 성명, 사진, 주소, 생년월일, 발행번호가 수록된다.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현장에서 증 표면 내용과 IC칩 내부 정보의 일치 여부를 판독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위·변조 판별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기관, 병원, 통신사대리점, 법무사, 중개사 등에 판독기를 총 30만 개 보급할 예정이다.

<표 1> 전자주민증 이용례

유형	이용 목적	이용 주체	이용 방식
일상 생활에서 신분확인	술, 담배, 잡지 등 성인물품 판매 연령 확인	편의점, 마트, 서점 등	주민등록증 표면 정보 확인 (플라스틱 증과 동일)
	선박료, 항공료, 관광료 할인 등 지역민 우대	선박, 항공사, 여행사 등	
	연령확인이 필요한 영화, 연극 공연 출입 등	극장, 공연장 등	
주요 거래에서 신분확인	신용카드 신청, 보험상품가입 등	카드사, 보험사, 은행 등	IC칩 내용 확인 및 주민등록번호 열람 (판독기 이용)
	대출·담보, 부동산거래·공증, 휴대폰 개설 및 병원 진료카드 작성 등	금융기관, 병원, 통신사대리점, 법무사, 중개사	
	여권발급, 운전면허증 발급 등 각종 자격증 발급	행정기관 또는 자격증 발급업체	
	출입국 관리, 선거인명부·납세자 확인, 실업급여지급 등 행정업무 수행	행정기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 등 민원처리	행정기관	

* 출처: 행정안전부(2011c; 2011e)를 수정

부수적으로는, 전자적 방식이 아닌 탓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인식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의 전자주민증 도입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는 사실⁴³도 전자주민증 도입의 필요성으로 제시되고 있다.

2. 현재 심사 중인 전자주민증 관련 법안의 내용

정부가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내용 가운데 전자주민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추가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주민등록증 수록항목에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 및 ‘혈액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주민의 수록신청이 있는 것’을 추가한다(개정안 제24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3호, 제9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 둘째, 주민등록증에 수록되거나 표시되는 정보는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수록의 방법, 전자적으로 수록된 정보의 타인에 대한 제공 또는 열람 방법, 보안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조 제4항).

그러나 이에 대하여 인권시민단체의 비판이 제기되었다. 우선, ‘주민의 신청’이라는 요건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는 요건을 통해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사항을 사실상 모든 개인정보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판독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지적되었다(다산인권센터 외, 2010). 의료계는 전자주민증에 혈액형 정보를 수록하는 것은 실제 수혈에서는 사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험하다고 반대하였다(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2011;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

43 행정안전부는 OECD 34개국 중 11개국(32%)이 전자신분증을 운영 중이고 6개국이 도입 계획이며, 전 세계적으로 43개국이 전자신분증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0; 행정안전부, 2011c).

의료단체연합, 2011).

그러자 행정안전부는 2011년 3월 국회 상임위원회에 수정안을 회람하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주민등록증 수록항목에서 ‘혈액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주민의 수록신청이 있는 것’ (개정안 제24조 제2항 제11호)을 삭제하고 “혈액형.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수록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고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다(수정안 제24조 제2항 제12호). 또한 새로 도입되는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는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거나 유추할 수 없는 형태로 부여하도록 하였다(동조 제3항). 한편 주민등록증 정보의 전자적 수록에 대해서는 근거 조항을 따로 두고(수정안 제24조의2), 주민등록증에 수록되거나 표시되는 정보는 ‘주민등록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 한 목적 하에서 전자적으로 수록하도록 하고(동조 제1항) 행정안전부가 전자적으로 수록하는 주민등록증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과 기술적 안정성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며(동조 제2항), 전자적으로 수록된 정보를 판독기를 통하여 열람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동조 제3항). 또한 주민등록증에 전자적으로 수록된 정보는 판독기를 통하여 수집·저장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동조 제4항 및 제37조 제11호) 그 이외에 전자적 수록의 방법, 열람방법, 보안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수정안 제24조의2 제5항).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전자주민증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IV. 전자주민증 쟁점 사항의 검토

1. 도입의 필요성 평가

전자주민증이 기본권 침해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려면 그 도입 필요성에 드러나 있는 목적이 정당한지, 수단이 적합한지,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는지, 법익의 균형을 보장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첫째, 신분증 수록사항의 변화나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려는 목적으로 전자주민증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 새 사진과 새 주소의 반영 및 유효기간과 증 발행번호 등 새로운 요소의 적용을 위해서 주민등록증 경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 사실이 전자적 기능을 요하지는 않는다. 수록사항의 변동은 플라스틱 주민증에도 적용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뿐이라면, 굳이 IC칩을 채택할 이

유도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등을 전자화할 필요도 없다. 그냥 현행 주민등록증의 경신주기마다 사진, 주소, 유효기간, 증 발행번호를 새로 수록해 가면 충분하다(오길영, 201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1).

증 발행번호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이라는 주장도 의구심을 낳는다. 행정안전부는 증 발행번호를 도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증 발행번호를 주민등록번호와 병행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⁴⁴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육안으로 보이지 않게 칩에 내장하여 판독기를 통해 전자적으로 열람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비밀번호 입력이나 지문 인식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승인을 얻으면 최소한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언급하고도 있다. 그러나 현재처럼 주요 거래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주민등록번호에 의존하는 식별 구조가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증 발행번호를 주민등록번호와 병행하여 사용하면 주민등록번호 위주의 식별 관행이 존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증 발행번호에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둘째,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전자적으로 수록하는 것은 오히려 유출 위험을 높일 것이다. 현재까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경로로 주민등록증이 지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⁴⁵ 그러나 주민등록증에서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하면 이로 인한 유출 위험이 커질 것이다. 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른 피해는 외관상의 노출에서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정보 처리의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의 양상은 첨단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저장, 전송, 공동이용 등에 의해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IC칩에 내장시킨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정보의 침해를 감소시킨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권건보, 2010).

전자주민증은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칩에 내장하여 육안으로 보이지 않게 할 뿐 사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은 아니다. 앞서 <표 1>에서 보았듯이 정부는 편의점 등 일상생활에서 신분을 확인할 때 플라스틱증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증 표면정보 확인으로 그칠 것이므로 전자적 이용이 제한될 것이라고 관측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전자주민증의 민간의 이용을 명시적으로 규제하지 않는 다음에야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에 대한 전자적 판독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공공과 민간 기관에서 생체정보를 널리 사용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은 중대한 위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본인 인증 방식은 비밀번호와 지문 인식인데, 암기를 해야 하는 전자에 비하여 간편한 후자가 널리 사용될 것

44 “초기에는 증 발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병행 사용하되, 일정 유효기간을 두어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필요시 승인을 얻어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행정안전부, 2011f).

45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신고와 상담 건수는 2004년 1만7569건에서 지난해 5만 4832건으로 6년 새 3.1배 급증했다.”(뉴시스, 2011)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도용이 늘어가는 것은 옥션 등 최근 몇 년 새 인터넷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은 자명한 이치이다. 만약 이 민감한 정보들이 장차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된다면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필요한 것은 전자화가 아니라 해당정보의 이용 제한과 삭제이다. 주민등록번호가 갖는 문제점은 위·변조 식별 보안장치가 내장된 IC칩에 암호화해 저장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가진 체계상의 문제나 오남용의 문제를 방지한 채 주민등록증에 내장된 IC칩으로 숨기기만 할 경우 오히려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이 증대될 위험이 있다. 국가가 생체 인식을 사실상 조장하는 방식으로 국가신분증을 운용하는 것도 중대한 기본권 침해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현행의 방식으로 수록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권건보, 2010; 2011). 전자주민증에 통합신분증이나 전송 기능이 전혀 없다는 정부 계획대로라면, IC칩은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숨기기’ 위한 장소에 불과하다.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이 삭제된다면 이의 보관을 위한 IC칩 역시 불필요하다.

셋째, 전자주민증 도입의 가장 강력한 목적은 플라스틱 증의 위·변조 범죄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의 실제 발생 현황을 보면 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경찰청에 따르면 위·변조 범죄 발생현황은 2007년 387건, 2008년 428건, 2009년 499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변조 범죄는 주로 청소년층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증 정보를 변조하는 것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0). 성년이 되면 해소될 청소년의 변조 행위를 이유로 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심각할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 다른 주요 위·변조 유형과 수법은 아예 중국으로부터 위조 주민등록증 반제품이나 완제품을 들여오는 ‘조직연계형 범죄’ 인데(행정안전부, 2010b) 위조 과정에는 다른 경로로부터 부당하게 획득한 개인정보가 활용된다고 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0). 전자주민증이 널리 유통되면 위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현재처럼 조직연계형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전자주민증의 안전성 역시 장담할 수 없다. 대다수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⁴⁶ 부당하게 획득한 개인정보가 주민등록증 위조에 활용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역시 없다. 즉, 위·변조 문제에 관한 한 전자주민증 역시 완벽할 수 없고, 주민등록증 위·변조에 대한 문제 해결은 우리 사회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의존성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가운데 찾아질 수 있다.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요구하고 이에 손쉽게 의존하는 일이 줄어들어야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에 대한 위·변조 수요 역시 줄 것이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행정안전부는 근본적인 대안에 관심이 없다.

46 2008년 옥션에서 1천 8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2011년 7월에는 (주)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3천 5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2. 안전성 평가

전자주민증이 위·변조 문제에 대응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면 도입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전자주민증의 IC칩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 유출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 제도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0; 행정안전부, 2011c; 2011e). 먼저 기술적 보안대책으로서 국제공통평가기준(ISO/IEC CC인증)에 따라 보안성이 검증된 IC칩을 적용하고, 판독기는 화면을 통해 개인정보를 육안으로만 확인하고 수집·저장·유출되지 않도록 구현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불법적인 판독기가 등장할 수 없도록 판독기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업데이트 등 판독 소프트웨어 관리를 위한 보안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도 한다. 제도적 보안대책으로서는 판독기를 통한 전자적 수록정보의 수집·저장 금지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관리적 보안대책으로서는 개인정보영향평가 및 기술적 보안성 평가를 사전 시행하여 개인정보 침해 위험요인을 차단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기술적 대책에 있어 IC칩이 다음 유효기간까지 안전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⁴⁷ 기술발전 속도에 비추어볼 때 현재의 안전한 기술이 미래에도 계속 안전한 것이라는 장담은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⁴⁸ 우선 판독기의 불법 개조나 해킹이 가능하다. 판독기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은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위험하다. 비접촉식 IC칩은 그 특성상 3~10cm 이내 거리에서 무단으로 열람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은 행정안전부가 인정하는바 대로이며,⁴⁹ 판독기 업그레이드를 위한 입출력 장치를 통하여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의 방지책으로서 주민증을 제시받은 업무처리자가 발행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민원인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지만(행정안전부, 2011a), 이는 발행번호와 비밀번호가 함께 수집되거나 유출되면 다른 정보 유출도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IC칩 자체가 해킹되는 경우에는 전 국민의 전자주민증을 전량 교체해야 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⁵⁰ 이는 행정안전부가 주

47 2008년 국정감사에서 진수희 의원은 금융 ic 칩의 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혔으며(뉴시스, 2008), 송영선 의원은 국감장에서 전자여권의 무선 해킹 시연을 해보이기도 하였다(뉴스라이브, 2008).

48 “현행 주민등록증 역시 도입당시에는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위·변조가 쉽게 되어 버린 것은 이러한 측면의 사례로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김주영, 2011)

49 “ic 칩의 특성상 3~10cm 이내 리더기에서 정보가 읽힐 수 있는 위험”(행정안전부, 2011a).

50 “먼저 ic 칩 자체가 해킹된 경우, 이를 판독기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치료한다는 것은 그 발상부터 이상한 이야기이다. ic 칩 자체가 해킹되었다면, 당해 ic 칩이 장착된 카드를 폐기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 금융감독원의 ic 카드 사건에서도,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전량 교체하기로 했음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라 하겠다.”(오길영, 201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1)

장하는 대로 판독기의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함⁵¹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자주민증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는 비전자 신분증의 위험요소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과거 한국전산원은 비전자 신분증의 위험요소가 ‘증’ 자체의 위·변조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해, 전자 신분증의 위험요소는 발급부터 이용까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전 과정에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한국전산원, 1996). 즉, 발급센터 시설물에 대한 위법한 접근, 발급센터의 전산망 시스템에 대한 침해, 발급센터 시설물과 전산망에 대한 자연재해(수해, 화재, 정전, 지진 등), 발급센터와 관련기관 운영자에 의한 대규모 정보유출, 발급센터에 LAN(근거리통신망), WAN(원거리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련 통신망과 온라인무인발급기를 통한 침해, 카드 외부 기재사항 위·변조, IC칩 내용의 전부 복제, IC칩 내용의 위·변조, 백지카드의 부정유출, 카드 자체의 부정발급, 분실카드의 무단사용, IC칩 기재사항의 불법열람 등 전자 신분증은 다양한 내·외부 정보처리 과정에서 유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사고에 있어서 해킹 등 외부자에 의한 요인 뿐 아니라 내부자에 의한 요인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⁵² 실제로 전자여권의 경우 발급업체를 통해 국무총리, 장관 할 것 없이 92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하였다(김호연, 2011).

유럽 네트워크 및 정보보호진흥원(ENISA·Europe Network & Information Security Agency) 역시 전자주민증의 취약점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ENISA, 2009). 첫째, 전자주민증 설계상의 결함으로서, 해커(attacker)나 이용자의 보안키 취득 허용, 해커의 전자주민증 복제 허용, 해커나 이용자의 전자주민증 정보 변조 허용, 해커가 훔친 카드나 위임된(delegated) 카드에서 비밀번호 획득 허용이 발생하는 경우, 둘째, 암호화나 인증 프로토콜, 또는 실행상의 취약성으로서, 암호키가 너무 짧거나 예측가능한 비밀번호, 깨어진 암호 알고리즘, 재전송 공격(replay attack)을 허용하거나 추가적인 보안을 제공하지 않는 프로토콜, 이러한 프로토콜 실행상의 취약성이 존재하는 경우, 셋째, 단말기의 취약성으로서, 트로이 목마, 불법적인 브라우저 플러그인 다운로드, 불법적인 SSL 인증을 허용하는 소프트웨어나 실행과정상의 취약성이 존재하는 경우, 넷째, 특정한 공격을 허용하는 인증 아키텍처와 프로토콜의 취약성으로서, 상호인증의 부족, 인증 과정에서 물리적인 토큰 불요구, 크리덴셜의 기한 미종료, 대역외부(Out-of-

51 “해킹기술 발전에 대비, 불법개조 및 해킹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전용sw를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행정안전부, 2011c).

52 감사원은 공무원이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무단 열람하고, 외부로 유출하는 문제를 완전히 차단하긴 어렵다고 보았다(감사원, 2008). 2006~2009년에는 총 343명의 공공기관 직원이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았고(동아일보, 2011), 2010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유출사고는 모두 1천196건으로 이 가운데 업무 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558건(46%)을 차지하였다(연합뉴스, 2011).

Band) 인증의 부족, 요구되는 것보다 더 많은 개인정보의 거래 인증이 발생하거나, 비밀번호나 크리덴셜이 너무 짧을 경우. 다섯째, 기반시설의 취약성으로서, DNS 스푸핑이나 포이즈닝, DDOS 공격 등이 가능한 경우. 여섯째, 이용자의 행위나 인지 부족 문제로서, 피싱 메일, 불법적인 인증, 세션 미종료, 전자주민증 임대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일곱째, 전자주민증 절도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런 위협을 행하는 행위자에는 악의적인 해커도 있지만, 서비스 제공자도 주요 행위자 중 하나이다. ENISA는 “개인정보는 상업적 목적으로 수집되고 사용되며 심지어 판매될 수 있다” 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개인정보 취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라는 점을 비추어볼 때 이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경고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위협 요인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안전을 장담하기 보다는 ‘정보분리의 원칙’⁵³ 하에 시스템을 분산시키거나 ‘선택권’을 존중하는 예방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독일은 개인번호나 지문을 국가 중앙 차원에서 관리하지 않으며, 전자 기능의 삽입과 지문 수락을 선택 사항으로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전자주민증 도입 이후에도 전자 기능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전자신원증명의 보안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이재경, 2011). 스웨덴, 핀란드, 일본 등에서도 본인의 신청이 있을 때만 전자신분증을 발급해주고 있을 뿐이다(권건보, 2011).

그런데 이들 국가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적인 주민등록번호제도와 지문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전자신분증의 도입에 따른 폐해가 훨씬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권건보, 2011). 국가는 출생 시점부터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이 번호를 기준으로 한 주민등록을 국가 차원의 중앙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이 정보를 은행과 같은 민간 기관을 포함한 53개 기관과 온라인으로 상시 공유하고 있다(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2011). 국민은 국가신분증 발급에 응해야 하며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의 날인과 그 수록도 강제사항이다. 따라서 이미 전자주민증을 도입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보아도 한국에서 전자주민증을 도입할 때의 위험성이 무척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의 개정안이나 수정안은 제도적 대책으로 전자적인 수록정보를 판독기를

53 *특정된 목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른 기관에서 다른 목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원칙적으로 통합되지 않고 분리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떤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통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한다든가 자동검색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러한 내용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인구조사판결에서 언급한 ‘정보상의 권력분립’의 원칙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권력이 정보통일체로서 단일화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동 재판소의 선언은 국가행정조직이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소지가 있는 개별 행정부서들에 의한 정보접근이 차단되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을 요청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권건보, 2005: 222면)

통하여 수집·저장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다른 방법으로 전자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방침과 다른 판독기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도 있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국내외적 사회경제적 동기가 법문상의 처벌 규정을 압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사양도 공개되지 않았고 검증도 되지 않은 기술적 안전성에 대하여, 정부의 장담을 막연하게 믿고 국회가 전자주민증을 심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관리적 대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기술적 안정성과 개인정보영향에 대한 평가는 자부처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 외에도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판독기를 통하여 수집·저장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법규안에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 정부가 행정기관은 물론 금융기관, 병원, 통신사대리점, 법무사, 중개사 등에 판독기를 널리 보급할 예정인 만큼, 공공기관과 민간 기관에서의 전자주민증의 사용 목적이 현재의 주민등록증 사용 목적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전자주민증에서 주민등록번호는 IC칩에만 수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수집과 저장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열람만 가능하고 사본 생성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공공과 민간 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혹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사본을 보관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도록 할 계획일까? 물론 이번 기회에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과 보관이 단번에 일소된다면 무척 혁신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신원 확인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법률들을 모두 개정해야 할 것이다(김민호 외, 2009). 하지만 우리 정부에는 그럴 의지가 사실상 전혀 보이지 않으니 해당 조항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3. 침해의 확장 가능성 평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자주민증의 도입 필요성이나 위·변조로부터 안전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15년 간 명분과 사양을 바꾸어 가며 국가신분증의 전자화에 집착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전자주민증에 대한 중대한 우려 사항은, 전자 기능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전자주민증의 기능이 도입 당시 심사되었던 사양 이상으로 확장되면 그 침해성이 커질 것은 자명하다. 대표적인 의혹이 통합신분증의 등장과 네트워크 연동이다. 정부는 전자주민증에 통합신분증이나 전송 기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계속하여 강조하여 왔다.⁵⁴ 그러나 IC칩에는 기술적인 확

54 *이번에 추진하는 전자주민등록증에는 공인인증서,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의 다른 정보를 기재하지 않으며, 통합신

장성이 존재하는 반면, 개정안과 수정안 어느 곳에도 이러한 기능의 확장을 방지할 수 있는 법규정이 부재하다.

첫째, 통합신분증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있다. 잘 알려진 대로 1990년대 전자주민카드 계획은 한 장의 카드에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인감 등 7개 분야 47개 정보를 수록한 통합카드로 계획되었다. 2006~2007년 도입이 추진되었던 차세대 주민등록증 발전 모델 연구결과에서도 연계키 수록을 통해 운전면허·건강보험 등 다른 신분증과의 연계방안이 검토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는 전자주민증 역시 통합신분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줄지 않고 있다. 하나의 카드를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통합신분증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수집되고 집적된 개인정보를 연계 내지 통합하여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의 원칙 및 목적 외 이용 금지를 사실상 형해화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 안전성에 있어서도 취약하다(ENISA, 2009).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에 명확한 규정 없이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증과 다른 신분증을 연계·통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였다. 운전면허, 건강보험 등 다른 신분증과의 정보 연계를 위해서는 IC칩에 연계키를 수록하여야 하며, 이는 주민등록증 수록항목으로서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이다(행정안전부, 2011e). 그러나 개정안과 수정안 어디에서도 전자주민증에 대한 ‘정의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밀번호, 암호키 등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하여서는 법에 명시된 주민등록증 수록사항과 별도로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수정안 제24조의2 제5항). 그렇다면 건강보험 등 특정한 신분 데이터베이스에 인증할 수 있는 ‘연계키’가 ‘기술적 세부사항’으로서 추후 삽입될 가능성을 법률적으로는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⁵⁵ 주민등록번호나 지문 그 자체가 타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위한 연계키로 사용되어 사실상 신분증 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분증 역할을 하는 방안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주민등록증은 필요 시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리더기[판독기를 의미함 - 옮긴이]로 확인만 할 뿐 주민등록증 정보가 수집·저장되거나 다른 어떤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니므로 감시사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증은 개인 신상기록카드가 아니므로 장애인 여부나 개인건강기록을 넣을 필요성도 없으며, 그러한 계획도 전혀 없습니다.”(행정안전부, 2010a); “전송망을 통해 중앙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읽는 방식이 아님”(행정안전부, 2011c).

55 “나아가 수정안이 입법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정의규정’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이, 절묘한 우연인 것인지도 묻고 싶다 ... 혹시나 ‘증’에 부착되어 있는 ic 칩은 법문의 표현처럼 ‘전자적 수록의 방법’에 불과하여 제외되는 것은 아닌가? 기술적인 상세를 덧붙이자면, ic 칩 속에 포함되는 메모리 공간, 즉 EEPROM, RAM, ROM 가운데 어느 부분까지가 정확히 주민등록증의 일부인가 하는 점이다. 나아가 보안용 코드도 수록사항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라면 인증용 코드는 어떠한가? 즉 기술적 필요로 인해 수록되는 정보들은 수정안의 제24조 제2항의 수록사항에 포함되지 않아도 당연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 어떤 이도, 현재로서는 도무지 알 방법이 없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극적이라고 판단된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ic 칩의 제원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거나, 그렇지 않다면 이렇듯 적당히 얼버무림으로써 무언가를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준비성이 많은 누군가가 차세대 전자주민증을 대비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전과기록과 연계할 수 있는 key 값을 전자주민증의 정의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메모리에 슬쩍 넣어두거나, 기술적 필요로 인해 수록되는 각종의 정보 속에 포함시켜 놓는다면 어떠할까? 현재의 주민등록법 체제에서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오길영, 201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1).

둘째, 개인정보의 네트워크 전송과 집적의 가능성이 있다. 실제 영국 등 해외 개인정보보호 감독관의 주요 우려 사항 중 하나가 전자주민증 이용기록이 디지털 족적으로 남는 것이다(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2005). 전자주민증이 국가 신분 시스템에 확인될 때마다 데이터 역사(trail)가 생성되면 추후 이에 대한 열람과 제공 등을 통해 한 개인에 대한 총체적인 감시와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자주민증의 위·변조 확인은 증의 표면정보와 IC칩 정보를 비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온라인 대조가 필요 없다고 말한다.⁵⁶ 그러나 이는 주장일 뿐, 개정안과 수정안 어디에도 개인정보의 온라인 전송을 금지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수정안 제24조의2 제4항에서 주민등록증에 전자적으로 수록된 정보는 판독기를 통하여 수집·저장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판독기 내부에 대한 수집·저장을 금지하는 것으로 국한된다.⁵⁷ 판독기를 네트워크에 연결할 경우, 수정안대로 판독기로 정보를 수집, 저장한 경우의 처벌 규정만으로 정보 수집이나 저장행위를 예방하기 어렵다(참여연대, 2011).

또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을 이유로 추후 온라인 연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도 ARS(전화 1382), 민원24 창구를 통해 주민등록증의 진위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수요가 일 평균 10만 건에 달한다.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주민등록증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니 그에 대한 진위 확인 수요 역시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증 표면과 내부 정보 비교 방식으로는 표면과 내부가 동시에 위·변조 되었을 경우나 분실증 등 타인의 주민증을 사용하는 경우를 판별해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위·변조 사례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진위 확인 방식은 중앙 주민데이터베이스에 질의하여 실제 존재하는 주민등록증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발행번호, 발급일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 서비스를 존속할 계획이지만,⁵⁸ 온라인 연계 가능성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독기에 업그레이드를 위한 입출력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만큼, 추후 진위 확인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장차 온라인 전송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중앙 주민데이터베이스에 질의하여 전자주민증 수록내용의 진정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질의내역을 저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전자적 방법의 신분확인용으로 전자주민증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마땅하지만 현재의 개정안과 수정안에는 이러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56 “전자주민증의 위·변조 확인은 증의 표면정보와 ic 칩 정보를 비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온라인 대조가 필요 없고 온라인화할 계획도 없음”(행정안전부, 2011d). 추후 재작성된 같은 제목의 문헌에서는 이 표현이 “전자주민증의 위·변조 확인은 증의 표면정보와 ic 칩 정보를 비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온라인 대조가 필요 없음”이라고 변경되어 ‘계획’에 대한 확인이 사라졌다(행정안전부, 2011e).

57 “수정안의 어느 조항을 살펴보아도 네트워크 케이블이 판독기에 설치되지 않는다는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 ‘해킹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판독기의 전용 소프트웨어를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트워크 케이블이 장착되어야만 할 것이다.’”(오길영, 201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1).

58 “진위확인이 필요하나 리더기가 없을 경우 인터넷서비스(민원24) 및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정보 확인 가능토록 서비스 제공”(행정안전부, 2011c).

그밖에 개정안과 수정안 모두 시행령 위임 범위가 넓다는 점은 여전한 문제이다.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통령령에서 전자적 수록의 대상, 방법, 활용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짐작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여기서 IC칩에 어떠한 정보를 내장할 것인지, 내장된 정보를 어떻게 전자적으로 확인할 것인지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주체에게 있어서 기본권의 실현을 위하여 매우 중대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수록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범위의 제한도 가하지 않고 죄다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평가될 소지가 크다(권건보, 2010).⁵⁹

또한 판독기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 대해 제공하는 경우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누락되어 있고, 주소 변경 등 내용 변경 및 재발급에 대한 규정도 미비하며, 주민등록증 위·변조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 또한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하여 둔다(송희준 외, 2007).

IV. 주민등록제도의 검토

1. 주민등록제도의 인권침해성

주민등록증 정신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전자적 기능의 도입 여부보다 인권침해적인 요소에 대한 재고이다. 대표적인 사항이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수록, 그리고 주민등록증의 의무발급 문제이다.

주민등록증제도는 애초부터 복지행정 등의 대국민 행정에서 수급자의 신분확인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신분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이름, 사진, 주소)만을 수록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쉽게 색출하기 위한 여러 정보들(지문, 병역사항, 본적, 호주, 고유일련번호 등)을 포함하여 주민등록증에 수록하게 된 것이다(김주영, 2011). 주민등록제도의 제정과 개정의 전 과정에 걸쳐 정보인권 문제가 필연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다.

우선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의 수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계속되는 주민

59 “만일 전자적 수록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전자적 수록의 한계를 법률에서 어느 정도 명시한 다음에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적어도 법률에서 ‘주민등록번호, 지문 기타 민감한 개인정보’를 전자적 수록의 대상으로 한다든가 하는 제한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전자적 수록은 ic 칩 등에 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든지, 전자적으로 수록된 정보를 판독하는 장치에는 저장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든지, 혹은 전자적으로 수록된 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할 수 없다든지 하는 등의 규정도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법률에서 민간영역에서 리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을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권건보, 2010; 고문현 외, 2010).

등록번호 유출 문제는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중대하게 위협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연령, 성별, 지역 등 개인정보를 내포하는 조합체계를 가지고 영구적인 고유식별자로 기능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의 영역에 걸쳐 광범한 목적에 활용되도록 요구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가 전산망에 의해 분리된 개인정보들이 서로 비교되거나 통합될 수 있도록 연결시키는 매개체로 활용될 경우 국민은 정보의 객체로 전락할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는” (제1조)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등록법상 전 국민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김일환, 2005).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및 오남용 위험성과 위헌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증 표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없앤다고 해서 그것으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있는 사용 범위를 고유의 행정 목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⁶⁰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조합체계를 개인식별의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을 강구하는 한편으로, 법률상 주민등록번호의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분야에서 주민등록번호의 고지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가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김일환, 2005; 권건보, 2010; 고문현 외, 2010).

또한 주민등록증상의 지문 정보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실제 국가 행정 사무에서 지문 정보의 활용은 주로 범죄의 수사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제도 본연의 목적과 거리가 있으며,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지문 정보가 주민등록제도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예도 없다. 무엇보다 주민등록 발급 시 모든 국민을 상대로 열 손가락의 지문을 강제로 날인하도록 하고 그중 일부를 주민등록증에 수록하도록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존엄성을 위협하는 것과 같다(김일환, 2005; 김주영, 2011; 권건보, 2011). 특히 전자적 방식으로 지문 정보 활용이 늘면 생체정보가 오·남용될 소지가 높아지는 만큼 지문 정보의 주민등록증 수록은 재고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신분 확인 관행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신분 확인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강제되면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의 개인정보 수집이 늘고 이에 대한 공격 또한 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음은 주지하고 있는바 대로이다. 따라서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은 온라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는 것이다(심우민, 2011). 오프라인 신분증에 대한 위·변조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도 역시 불필요한 신원 확인 요구를 제한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60 캐나다 등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사회보험번호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그 용도를 벌금부과, 소득세 징수, 실업급여 등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번호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에게 제시요구의 목적과 강제성 여부, 제시 거부시의 결과에 대하여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김일환, 2005).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 변화 없는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보호의 수단이 아닌 또 다른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는 것에 불과하고 불필요하게 본인인증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제도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1). 전자주민증이 보급되면 일상생활 곳곳에서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판독이 늘어날 것이다. 이는 익명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기본권 제한임에는 물론이고⁶¹ 법적 근거가 없는 신분 확인 요구를 널리 확산시킬 것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타인명의 휴대폰 개통’의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전자주민증을 활용하는 예를 제시하여 왔다(행정안전부, 2010b; 2011e). 현행 법률로 휴대전화 실명 가입이 법규 사항이 아닌데도 신분 확인이 유도되고 있는 것이다. 전자주민증에 대한 요구와 사용이 늘어갈수록 전자주민증을 기초로 한 신분증 통합 수요가 발생할 것 또한 예측할 수 있다.

정부는 주로 연령 확인 용도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편의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증 표면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판독기 수요를 감축해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행정안전부, 2011c; 2011e), 이들 업체야말로 현재 청소년 층에서 주민등록증이 변조되어 사용되는 주요 공간이고 진위 확인 수요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업체에서 판독기가 불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은 개연성이 없다.

마지막으로 국가신분증 의무발급은 기본권 제한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선택적 발급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 의무적 국가신분증 제도를 두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도 전자기능의 도입은 선택사항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 해외 사례

정부는 OECD 34개 국가 중 11개 국가에서 IC칩을 탑재한 전자신분증을 운영 중이며, 6개국에서 도입 추진 또는 논의 중에 있다고 주장한다(행정안전부, 2011c; 2011e).⁶² 그러나 이들 국가 상당수는 한국과 상황이 매우 다르다.⁶³ 특히 유럽연합 국가들은 통합국가의 건설 과제 앞에서 전자신분증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⁶⁴ 그러나 여전히 유럽 국가 내부에서도 전자주민증에 대한 거부감이 만만

61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헌재 2010. 2. 25, 2008헌마324, 2009헌바31 병합,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및 위헌소원 사건.

62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11 개국이 어디를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하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2010) 검토보고서에서 OECD 국가 중 전자주민증을 도입한 것으로 표기된 12 개국의 예를 검토하되 노르웨이를 제외하였다. 노르웨이는 전자주민증이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tatewatch, 2011; Wikipedia, 2011b).

63 이하의 각국 상황에 대한 분석은 기본적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2010) 검토보고서에 따른 것이고, 검토보고서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만 출처를 별도로 표시하였다.

64 예컨대 영국 전자주민증은 2005년 12월 EU에서 “common standards for security features and secure issuing procedures for ID cards”가 발표된 이후 가속화되었다고 평가된다(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5a; 2005b 참조).

치 않은 가운데,⁶⁵ 전자주민증을 도입한 국가들이라 하더라도 한국처럼 의무발급,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을 모두 한 제도 안에 포함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문현 외, 2010).

전자주민증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 각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독일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전자신분증을 도입하고 전자칩에 지문, 사진, PIN번호를 넣었으나, 전자 기능의 삽입 여부를 개인이 선택하도록 하였다. 지문 역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카드에만 저장하고 중앙 차원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지 않으며 경찰, 세관, 증 관련관공서 등 일부 기관에서만 읽을 수 있다. 전국적인 개인번호는 부여되지 않고, 신분증을 발급할 때 부여하는 일련번호는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할 때 새로 부여되며, 일련번호에 인적 사항이나 기타 사항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고, 공공 부문은 물론이고 민간 부문에서도 일련번호를 자료에서 인적사항을 추출하는 것 또는 자료의 결부를 가능하게 하는데 이용할 수 없다(고문현 외, 2010).

이탈리아는 의무발급이 아니고, 기존 신분증과 전자주민증이 병행 발급된다(Whitley, 2005; 2009; Wikipedia, 2011a). 국가신분증의 지문 수록은 명시적으로 시민이 의사를 표시할 때만 이루어지도록 법령을 두고 있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데이터베이스는 분산형이다(Whitley, 2009; Statewatch, 2011).

네덜란드는 의무발급이 아니고 의무발급에 대한 저항감이 상당하다(Whitley, 2005; 2009). 스웨덴은 의무발급이 아니고 지문을 수록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개인식별번호를 가지고 있지만 사용자 사회보장 서비스전달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권건보, 2005; 송희준 외, 2007; 고문현 외, 2010) 핀란드 역시 의무발급이 아니고 지문을 수록하지 않는다.

벨기에는 지문을 수록하지 않는다. 데이터베이스는 분산형이다(Statewatch, 2011). 에스토니아는 지문을 수록하지 않는다. 특히 포르투갈은 헌법 제35조 제3항에서 “시민들에게 다목적의 국민식별번호가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표준통일식별번호의 도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문현 외, 2010).

65 여러 국가들에서 전자 국가신분증에 대한 거부 역사가 유구하다. 프랑스는 1979년 말 내무부에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형태의 개인카드시행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지만,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지 모른다는 사회적 격론이 일었고 1981년 9월 새로 취임한 사회당 미테랑 정부는 개인확인카드의 도입을 포기하였다. 2003년에 다시 전자신분증의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생체정보 입력에 대한 반대여론에 부딪혀 이 계획도 보류되었다(고문현 외, 2010). 호주는 1985년 탈세 방지, 복지 행정, 불법이민확산방지 등을 이유로 전자적 방식의 오스트레일리아 카드를 도입하려는 계획이 발표되자 비판이 일었고, 정부기관인 뉴사우스웨일즈프라이버시위원회도 카드 계획안이 단순한 신원 확인 이상의 문제이고 정부에로의 권력과 권위의 집중화 수단으로서 호주에서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경고하였다. 결국 1987년 대중의 거대한 저항과 정당의 반란, 시민들의 불복종에 직면한 정부는 카드 입법안을 폐기하였다. 그밖에도 필리핀, 뉴질랜드 등에서 전자주민증 반대운동이 있었음이 보고되고 있다(임영화, 1997).

일본은 국가신분증을 전국단위에서 의무발급하지 않고 지자체별로 자율발급한다. 일본의 주민관리업 무는 전적으로 자치단체 소관으로서 시·정·촌의 주민정보는 상호 교류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중앙행정부처와 도·도·부·현의 지사는 소관사무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정·촌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IC칩이 내장된 주민기본대 장카드가 발급되고 있지만 주민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발급된다. 번호의 일종인 주민표 코드는 해당주민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 법령에서 정하는 사무처리용도 외로 요구하거나 이용할 수 없으며 민간 이용이 제한된다. 지문도 수록하고 있지 않다(고문현 외, 2010).

결국 전자주민증을 도입한 OECD 국가 중에서도 의무발급,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 제도를 모두 가 지고 있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전자주민증을 도입한 많은 국가들의 경우에도 선택발급하고 있 다. 나머지 OECD 23개국은 전자주민증을 도입하고 있지 않다. 특히 테러 방지 등의 명분으로 영국이 최 근까지 전자주민증을 추진하였으나 프라이버시 침해와 예산 논란 끝에 2010년 12월 관련 법률을 공식적 으로 폐지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분증 발급, 주민등록번호 부여, 지문날인 제도를 모두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데 에다 국민 대다수의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에 기유출된 한국에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면서 선례로 삼을 만한 국가는 거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면 국민에게 미치는 침해성 이 세계 유례 없는 수준일 것이다.

VI. 결론

전자주민증 도입 예산으로 정부는 10년 간 4,862억 원을 추계하였지만,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 는 비용을 합산하면 1조 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1).⁶⁶ 투입될 비 용에 비해 전자주민증 도입의 목적과 수단이 타당한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행정안전부가 인권시민단체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하나, 주민등록법 개정안 및 수정안은 전자주민증 도입의 충분한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주민등록증의 경신 필요

66 “주민증 분실분 차액 113억 원+ 정부부담 판독기 구입비용 차액 93억 원+ 민간부담 판독기 구입비용 차액 350억 원+10년 동안의 판독기 재구입비용(정부부담+민간부담) 974억 원=1530억 원의 추가비용이 계산된다. 따라서 정부가 산정한 총 예산 4862억 원에다 추가비용 1530억 원을 더하면, 총 639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만약 좀 더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 전자공무원증의 발급단가를 반영하면 ... 그 예산이 무려 9,825억 원에 다다르게 된다.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비용이다!”(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1).

성은 전자기능 도입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전자칩 수록이 아니라 정보 삭제에 대한 재고여야 한다. 전자신분증이 위·변조에 늘 안전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현재 제시된 법안으로는 통합신분증과 네트워크 연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전자주민증의 확장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수록, 그리고 주민등록증의 의무발급 제도는 집약적인 인권침해이다. 이미 현행 주민등록증도 주민등록제도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넘어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온 마당에 전자적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오남용될 위험성을 방지할 길은 도입하지 않는 것뿐이다.

정부가 이 민감한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일방적인 태도는 시민사회에서 이미 신뢰를 잃었다.⁶⁷ 정부의 막연한 장담과 기술적 낙관을 근거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기에는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전자주민증 도입 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참고 문헌

- 감사원, 200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행정정보 공유 및 관리실태”, 2008. 5.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2010, “혈액형 기입을 빌미로 도입하려는 전자주민증에 반대한다”, 2011. 3. 8.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1, “전자주민증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2011. 9. 6.
- 고문현·류시조·권건보·김주영·고문철·이남경, 2010, 「국가신분확인체계 발전방안연구」, 사단법인 한국비교공법학회, 행정안전부 지원, 2010. 12.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0, “전자주민증 갱신에 따른 소요비용 추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0. 11.

⁶⁷ 행정안전부는 관련 입법 예고를 3차례나 하는 과정에서도 전자주민증을 추진하는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공청회를 갖지 않았다. 갑작스런 입법예고 후 2달 만에 국회 법안 발의를 강행하여 불신을 자초하였다(참세상, 2010; 김주영, 2011).

- 권건보, 2005,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 권건보, 2010, “전자주민증 도입방안의 헌법적 검토”, 사단법인 한국 공법학회, 「공법연구」 제39집 제2호, 2010. 12.
- 권건보, 2011, “ ‘마이내리티 리포트’ 현실 되나”, 「인권」 통권 70호, 국가인권위원회, 2011 9 · 10.
- 김민호 · 지성욱 · 김명식, 2009,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방안연구」,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지원, 2009. 11.
- 김일환, 2005, “個人識別番號(住民登錄番號)의 違憲性與否에 관한 考察”,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토론회 「주민등록번호제도 이대로 좋은가?」, 2005. 4. 6.
- 김주영, 2011, “전자주민증 도입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10년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한국 공법학회, 「공법연구」 제39집 제3호, 2011. 2.
- 김호연, 2011, “외교부, 전자여권 개인정보 유출 축소 및 은폐 의혹!”, 김호연 의원실 2011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1. 9. 19.
- 뉴스라이브, 2008, “송영선 ‘20만원짜리 판독기로 개인정보 술술’ ”, 2008. 10. 7, <<http://www.newslive.co.kr/news/article.html?no=29502>>, 검색일: 2011. 8. 31.
- 뉴시스, 2008, “〈국감〉진수희 ‘IC카드 복제 가능…금융사고 위험 노출’ ”, 2008. 10. 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2337337>>, 검색일: 2011. 8. 31.
- 뉴시스, ““나도 모르게 내 정보가…” 갈수록 개인정보 유출피해”, 2011. 4. 2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817153>>, 검색일: 2011. 8. 31.

- 다산인권센터 · 문화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불교인권위원회 · 울산인권운동연대 · 인권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제주평화인권센터 · 진보네트워크센터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함께하는시민행동, 2010,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공동의견서” 및 “기자회견문 : 감시통제사회를 완성하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한다!”, 2010. 10. 14, <<http://act.jinbo.net/drupal/node/6229>>, 검색일: 2011. 8. 31.
- 동아일보, 2011, “공공기관 개인정보 과다보유: 경찰자료 2000년 이후 고스란히 ...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 ”, 2011. 2. 15.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1,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2011. 6.
- 송희준 · 김종철 · 조동섭 · 김상운 · 김현귀, 2007,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 행정자치부 지원, 2007. 12.
- 심우민, 2011, “네이트 해킹사고와 포털의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논점」 제 282호, 국회 입법조사처, 2011. 8. 9.
- 연합뉴스, 2011, “공공기관 정보유출 46%, 공무원 부주의 탓”, 2011. 9. 20.
- 오길영, 2011, “전자주민증 도입의 쟁점과 함의”, 「민주법학」 제46호, 2011. 7.
- 이민영, 2010, “정보인권의 법적 의의와 좌표”, 『정보인권의 법적 보장과 그 구체화 공동학술세미나』, 국가인권위원회, 2010. 12. 23.
- 이인호, 2009, 「정보인권의 개념과 헌법적 보장체계」, 국가인권위원회.
- 이재경, 2011, “독일의 전자신분증 제도”, 「최신외국법제정보」 2011년 제3호, 한국법제연구원, 2011. 6.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2011,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

- 의회 의견서” , 2011. 1.31.
- 임영화, 1997, “호주의 ID카드 반대운동” , 「이달의 민변」 1997년 7월호.
 - 임현만, 2005, “전자주민카드 정책과정상의 프라이버시 이슈와 교훈”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6권 제3호, 2005. 11.
 - 전성배,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보호 방안 검토” ,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토론회 「주민등록번호제도 이대로 좋은가?」 , 2005. 4. 6.
 - 조화순, 2005, “정보사회의 국가권력과 개인정보: 한국의 전자주민카드 도입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제39권 2호, 2005. 6.
 - 참세상, 2010, “전자주민증, 5월에 국민 몰래 도입하려다 무산” , 2010. 7. 9.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57603>>.
 - 참여연대, 2011, “행정안전부 제출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2010.9.20.의안번호 9418)의 행정안전부 수정안(2011.3)에 대한 참여연대 검토 의견” , 2011. 6. 23.
 - 한국전산원, 1996, “전자주민카드의 제작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1996. 12, 201면이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관련 개혁 제안서” , 1998. 2. 16,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nocard-2&id=804&page=1>>, 검색일: 2011. 8. 31.
 - 행정안전부, 2010a, “해명자료” , 2010. 9. 15,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bonbu/admi/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19960&userBtBean.ctxCd=1281&userBtBean.ctxType=21010002&searchKey=1&searchVal=¤tPage=1>>, 검색일: 2011. 4. 15.
 - 행정안전부, 2010b, “공청회 개최('10.10.25) 관련 자료제공 :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공청회 개최계획 및 참고자료” , 2010. 10.

- 행정안전부, 2010c,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개정안(수정)”, 2010. 12.
- 행정안전부, 2011a, “전자주민등록증의 IC칩 정보 열람 방법”, 2011. 2.
- 행정안전부, 2011b,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수정의견 검토”, 2011. 3.
- 행정안전부, 2011c,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추진방안”, 2011. 3, <<http://www.mopas.go.kr/gpms/view/jsp/download/userBulletinDownload.jsp?userBtBean.bbsSeq=1019958&userBtBean.ctxCd=1281&userBtBean.orderNo=1>>, 검색일: 2011. 4. 15.
- 행정안전부, 2011d, “전자주민등록증 관련 시민단체 주장 검토”, 2011. 4.
- 행정안전부, 2011e, “전자주민등록증 관련 시민단체 주장 검토”, 2011. 6.
- 행정안전부, 2011f, “설명자료”, 2011. 8. 9, <<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20661&userBtBean.ctxCd=1013&userBtBean.ctxType=21010002&tPage=1>>, 검색일: 2011. 8. 31.
- 행정안전부, 2011g, “11. 8. 11, 당정협의자료 :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2011. 8. 11.
-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2011,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http://pr.share.go.kr/fa/fa010/ehanaro/table/1.jsp>>, 검색일: 2011. 8. 31.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5a, "Draft Conclusions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s of the Member States on common minimum security standards for Member States' national identity cards", 2005. 11. 11, , <<http://www.statewatch.org/news/2005/nov/eu-biometric->

ID-Cards-Conclusions.pdf}, 검색일: 2011. 8. 31.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05b, "PRESS RELEASE: Main results of the Council", 2005. 12. 1-2, <<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Upload/JHA,1-2,12.05.pdf>>, 검색일: 2011. 8. 31.
- ENISA, 2009, "Privacy and Security Risks when Authenticating on the Internet with European eID Cards", 2009. 11. 26, <http://www.enisa.europa.eu/act/it/eid/eid-online-banking/at_download/fullReport>, 검색일: 2011. 8. 31.
-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2005, "The Identity Card bill - the information commissioner's concerns" , 2005.10, <http://www.ico.gov.uk/upload/documents/library/corporate/detailed_specialist_guides/id_cards_bill_-_ico_concerns_october_2005.pdf>, 검색일: 2011. 8. 31.
- Statewatch, 2011, "Statewatch Briefing: ID Cards in the EU: Current state of play" , <<http://www.statewatch.org/analyses/no-107-national-ID-cards-questionnaire.pdf>>, 검색일: 2011. 8. 31.
- Whitley, Edgar A, et al., 2005, "The Identity Project: An assessment of the UK Identity Cards Bill & its implications" ,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2005. 3, <http://www2.lse.ac.uk/intranet/LSEServices/ERD/pressAndInformationOffice/PDF/IDreport_updated.pdf>, 검색일: 2011. 8. 31.
- Whitley, Edgar A, and Hosein, Gus, 2009, Global Challenges for Identity Policies, Palgrave Macmillan.
- Wikipedia, 2011a, "Identity document" , <http://en.wikipedia.org/wiki/Id_card>, 검색일: 2011. 8. 31.
- Wikipedia, 2011b, "List of national identity card policies by country" ,

<http://en.wikipedia.org/wiki/List_of_national_identity_card_policies_by_country>, 검색일: 2011. 8.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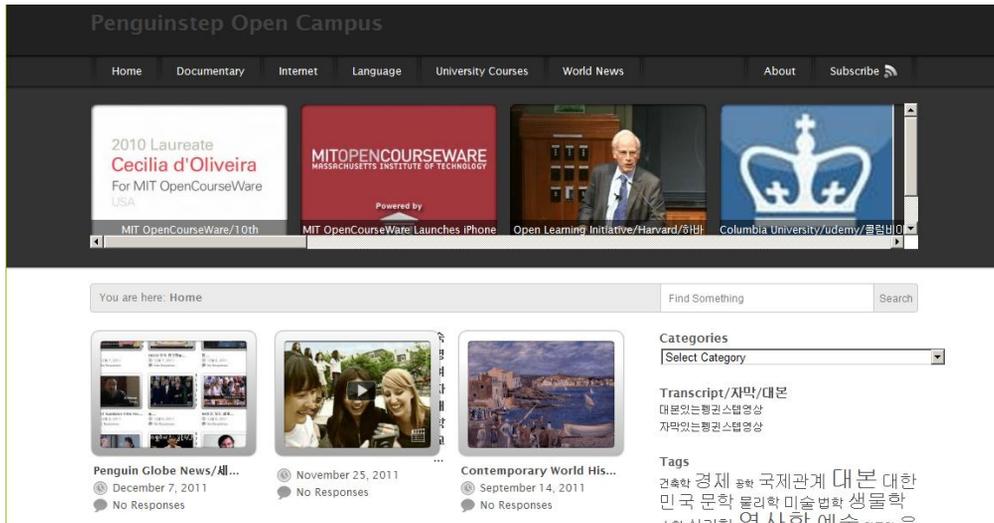
- 장여경, 2009.9.7, “당신의 인터넷은 안녕하십니까? 정보·수사기관의 전방위 인터넷 사찰 심상치 않다,” 미디어스
- Christian Fuchs, 2010.2.14, "Google Buzz: Economic Surveillance – Buzz Off! The Problem of Online Surveillance and the Need for an Alternative Internet"[구글버즈: 경제적 감시 – 버즈 끄기! 온라인 감시의 문제와 대안 인터넷의 필요성], Information – Society – Technology & Media
- Mitchell, Robert L., 2009.5.11, “What Google knows about you: Google may know more about you than your mother does. Got a problem with that?”[구글이 당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것: 당신의 엄마보다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구글, 문제 있나?], ComputerWorld.com
- Saxon, Elijah, 2009.11, "The Price of Free"[무료/자유의 가격], Social Text
- 분산적 창조성 연구소 메일링 리스트: [iDC] “Facebook Suicide (Bomb) Manifesto” [얼굴책닷컴 자살 폭탄 선언], 2010.5.28.
- 구글감시집단 웹사이트: <http://www.google-watch.org>

* 이 글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2011 제7호 게재

Section 011. 문화는 공유를 타고

동영상 강의 다모여라~ 펭귄스텝 오픈 캠퍼스

<http://www.penguinstep.net>



펭귄스텝 오픈 캠퍼스 홈페이지

TED, youtube, vimeo 등 인터넷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동영상 강의는 많지만 정작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불만찬 강의는 뭐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좀처럼 얻기 힘들어서 헤맨 경험 있으신가요? 뭐, 사실 영어의 압박이 더 큰 문제긴 하지만 말입니다. ㅎㅎ 이번에 소개할 '펭귄스텝 오픈 캠퍼스(Penguinstep Open Campus)'는 불만찬 강의 찾아헤매는 고민을 덜어 줄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숙명여대 역사문화학과 김형률 교수가 만든 웹사이트로, 수많은 인터넷 영상들 중에 함께 공유할 만한 지식과 정보를 모아둔 곳입니다.

적은 수긴 하지만 한글로 된 자막, 영어 대본이 있는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도 이 사이트의 장점. 물론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영어 공부를 하자며!! 공유하신 동영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학습의 자세가 조금! 필요한 사이트이긴 합니다! 철학, 경제, 음악, 미술, 환경, 정치, 종교, 인터넷 등 수많은 주제들 중에 이슈가 될만한 강의를 일단! 한글로 검색할 수 있는 감사한 정보공유 사이트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사이트 메뉴 중 About을 보시면 간단한 사이트 소개와 김형률 교수님의 동영상 메시지도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볼 때 약간 최불암 아저씨 닮으셨다는...^^

진보적 인문사회과학의 정보기지,

다중생활도서관 '노동자의 책'



다중생활도서관 '노동자의 책' <http://www.laborsbook.org>

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 앞 거리에는 '사회과학서점'이 있었습니다. 사회과학서점은 학생운동의 양식을 제공하는 비판적, 변혁적 인문, 사회과학 도서의 공급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밖 만남의 광장이기도 했습니다. 사회과학서점은 변혁적인 학생운동의 밑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 의한 사상탄압은 (비록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앞의 '사회과학서점'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실용서나 시험 교재를 학습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책'은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작은 시작'으로 출발했습니다. 노동자의 책은 절판되거나 심지어 출판사도 없어진 과거의 비판적 사회과학 도서들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활동 결과물, 노동자들의 육필 수기 등을 디지털 문서로 제공합니다. 이미 보유 목록의 70% 정도인 1400여권을 디지털화했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책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최근에는 '후원회원' 기반으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일정한 후원회비를 내야 전자책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해고 노동자 등 어려운 경제사정을 설명하면 그냥 회원가입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 노동자의 책 홈페이지 : <http://www.laborsbook.org/>

CCL 콘텐츠를 찾아보자! Let's CC



영상을 만들거나,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할 때, 혹은 홈페이지를 꾸미고 싶을 때 이미지나 음악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것 다 직접 만들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만든 좋은 작품을 가져다 쓰고 싶은데...과거에는 자유롭게 가져다 쓸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딱 걸리는게 '저작권'이다. 영리업체라면 저작권료 내고 쓸 수도 있겠지만, 비영리 단체나 개인이 일일이 이용허락받고, 저작권료 지불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 그럴 때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을 적용한 이미지나 음악을 사용하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그런 자료를 어디서 찾을까 하는 것!

Let's CC는 CCL가 적용된 이미지, 음악, 동영상, 문서 등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 서비스다. 플리커, 유튜브, CC mixer, jamendo 등 글로벌 검색엔진 API로 개발하였다고 한다. 첫 화면은 구글처럼 깔끔, 단순한 페이지로 되어 있다. 검색창에 키워드를 넣고 검색하면, 관련된 이미지, 음악, 동영상, 문서별로 카테고리가 구분되어 검색결과가 나온다. 영리적인 목적으로 쓸 것인지, 수정해서 쓸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면, 그 조건에 맞는 결과만 보여준다. 음원서비스의 경우, 검색결과에서 미리 듣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기 전에 음원을 들어보고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사용자들이 직접 CCL이 적용된 콘텐츠를 즐겨찾기 하면, 유사한 키워드를 입력한 다른 사용자들에 대한 접근도가 높아지게 된다.

저작권 제도의 개혁도 필요하지만,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저작물이 많아져서 아예 저작권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제 Let's CC

* Let's CC : <http://letscc.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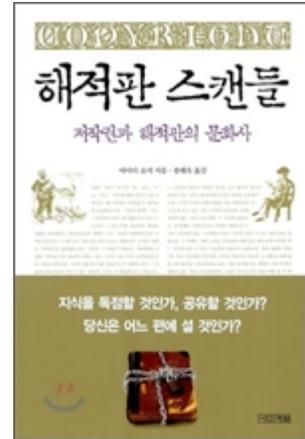
Section 100. 이달의 북킹

해적판 스캔들 : 저작권과 해적판의 문화사

『해적판 스캔들』

야마도 쇼지 지음/ 송태욱 역, 사계절, 2011

1774년 2월 22일,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궁전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내려집니다. 도널드슨 대 베케트 재판. 이 재판은 런던의 대형 출판업자(서점)와 이들의 해적판을 출판한 후발 출판업자가 대립한 것으로 저작권을 영구적인 권리로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만일 이 재판에서 대형 출판업자를 대변한 베케트 측이 승리했다면, 오늘날의 문화 환경은 지금과는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어떤 출판사가 지금까지 셰익스피어의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겠지요. 서적, 음반, 영화 등 저작물들은 훨씬 높은 가격에 팔렸을 것이고, 창작의 비용이 높아져 창작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소수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이 책은 도널드슨 대 베케트 재판을 중심으로 당시의 시대상황, 관련 인물들(서점주, 변호사, 판사 등)의 성향, 재판의 전개 과정을 마치 소설처럼 흥미롭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의 발전으로 저작권이 다시 한번 첨예한 사회적 모순의 중심에 선 현재, 이 책을 통해 과연 '저작권'이 무엇인지, 저자와 문화란 무엇인지 고민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의 과거를 통해 저작권의 미래를 조망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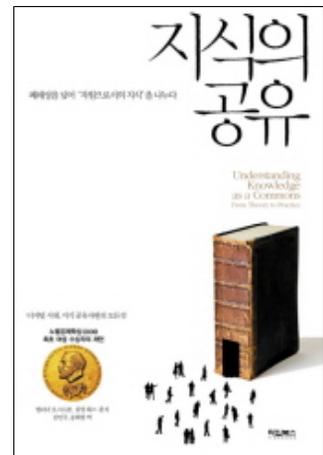
지식의 공유

: 폐쇄성을 넘어 '자원으로서의 지식' 을 나누다

『지식의 공유』

엘리너 오스트롬, 샬럿 헤스 공저/김민주, 송희령 공역, 타임북스, 2010

이 책은 지식을 공유자원(Commons)으로 본다. 그렇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미 우리는 '어떤 저작물의 권리자는 누구'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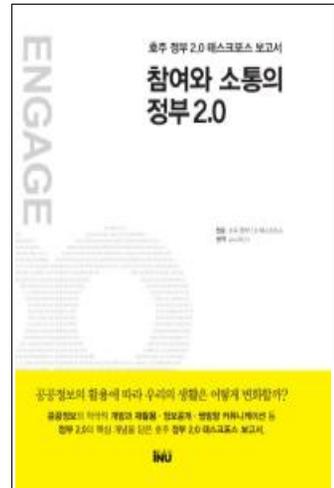


에 익숙해져있지 않은가? 사유화를 합리화하기 위한 '공유지의 비극' 이론. 최소한 지식에 있어서 '공유지의 비극' 이론은 오류를 가지고 있다. 지식은 남용에 의해 고갈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공유자원을 관리해나갈 수 있다. 이 책은 무척 두껍다. 주석 등을 포함해서 700 페이지나 된다. 이 책의 두께는 정보사회에서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는 지식의 인클로저 운동, 지식의 사유화에 대한 위기감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게 해준다. 그래서 서로 다른 영역의 석학들이 모였다. 이 책의 준비와 집필에 엘리나 오스트롬, 샬럿 헤스 등 10여명의 석학들이 참여했다. 오픈 액세스, 저작권, CCL과 같은 공개 라이선스, (디지털) 도서관 등 이론에서 구체적인 사례에 이르기까지 이 책이 다루는 범위는 광범위하다.

참여와 소통의 정부 2.0

『참여와 소통의 정부 2.0』

태스크포스 지음 /gov20.kr 역, 아이앤유, 2011



2009년 '서울 버스 소동'이 있었다. 한 학생이 서울, 인천, 경기도 버스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아이폰용 무료 어플인 '서울 버스'를 개발하여 앱스토어에 공개하였는데 경기도가 이를 차단한 것이다. "공공정보 무단이용"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공공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시민의 마땅한 권리가 아닐까? 국제사회의 문제의식은 정부가 생산하고

보유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자적으로 공개하는 정부 1.0을 넘어 정부 2.0으로 가고 있다. 정부 2.0은 한마디로 웹 2.0을 이용하여 정부가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자는 얘기다. 기술적인 혁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관료사회의 폐쇄적인 관행과 체질 개선이 필수적이다. 호주 정부 2.0 태스크포스는 정부 2.0을 제안하는 이 보고서를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CL)로 공개하였다.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한국어 번역과정 또한 웹 2.0 적이었다. 지금의 한국 정부에서 이런 체질 개선은 요원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Section 101.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무차별 노동감시, 우후죽순 CCTV



2011년 9월 29일 <서울시민과 노동자 감시하는 CCTV 철거하라! 기자회견>

정보인권운동에서 계속 제정을 요구해왔던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 30일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진보넷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제대로 시행되어 노동자와 시민을 무분별하게 감시하는 일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일에 먼저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자를 위한 개인정보 해설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시장 후보들에게 앞으로 서울시 CCTV를 재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진보넷은 앞으로 계속 개인정보보호법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두눈 부릅뜨고 감시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지메일 감청

진보넷은 패킷 감청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국가정보원이 행해온 '패킷감청'에 대하여 인권단체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지요.

그런데 얼마전 청구인측에 도달된 국정원 답변서는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외국계 이메일인 지메일(@gmail.com)에 대하여 국정원이 그동안 패킷감청 방식으로 감청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감청을 계속하기 위하여 패킷감청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 전용회선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패킷 감청은 저인망식 감청으로 특히 인권침해적입니다. 패킷 감청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에 앞장서는 정부

국정감사의 시작과 함께 진보넷의 9월도 좀 바빴어요.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개인정보 유출 실태는 참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에 앞장서고 있었거든요.

작년 8~11월 전자여권 신청자 92만여명의 주민번호, 여권번호, 여권발급일·만료일 등 신상 정보가 여권발급기 운용업체 직원들에 의해 이 회사 본사로 유출됐다고 합니다. 그런가하면 정부가 주민정보를 채권추심업체에 30원씩 받고 판매해온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지요.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3년간 5천 9백만 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17억 8,054만 3,230원의 수익을 올렸대요.

개인정보 보호한다면서 생뚱하게 전자주민증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런 작태부터 뜯어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등록제도에 한방 날리길 바라시는 회원 여러분께서는 주민번호 변경 청구 소송에 참여해주세요!

불법복제 명분으로 검열 강화?

지난 5월 19일,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었는데요. 이는 저작권 침해와 음란물 유통을 명분으로 P2P/웹하드 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한 것입니다. 즉, 쉽게 P2P/웹하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이지요.

이어 지난 8월 23일, 개정된 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는데요. 이 시행령은 웹하드 규제를 명분으로, 이용자의 표현의자유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로그 기록을 2년 동안 보관하도록 한다든가, 의무적으로 2인 이상의 모니터링 요원을 두도록 하고 있지요. 자본금 3억원 이상의 사업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창의적인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일관된 규제 체제를 갖지 못하고, 그때 그때 요구가 있을 때마다 누더기로 법을 만드는 관행은 언제쯤 벗어날지요. 의견서(<http://act.jinbo.net/drupal/node/6549>)

방통심의위의 밥그릇 꼼수

요즘 <나꼼수>가 장안의 화제라고 하지요.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구나 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미디어 심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진보넷은 여러 단체들과 함께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어요



기술적인 실효성도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심의는 인권 침해라구요. 국가인권위와 유엔에서 그만두라고 했는데도 부득부득 자꾸만 일을 벌이는 심뽀는 뭐죠? 자기 밥그릇 지키겠다는 꼼수가 아닐까 싶네요.

서울시 CCTV 정책 재고해야

새로운 서울시장이 탄생하였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오세훈 전시장님이 남발했던 CCTV부터 손보셔야 할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로 발효하기도 했으니 말이지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법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녹음을 금지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상이 사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요즘 어린이집 CCTV가 논란 거리인데요, 공공정책에서 CCTV 만능주의는 자제해야 마땅합니다.

오픈소스 포럼, 웹/문서 접근성에 대한 세미나 개최

지난 10월 19일, 오픈소스 포럼에서 웹/문서 접근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오픈소스 포럼은 한국우분투커뮤니티 등 오픈소스 커뮤니티와 진보넷, 정보공유연대 등이 함께하는 네트워크로서, 올해 상반기에 5번에 걸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로 공공기관에서 HWP를 사용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발제자인 소재성님이 쟁점을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표준 문서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용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캠페인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페이스북 오픈소스 포럼 그룹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독일 해적당과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



지난 10월 26일, 오픈 컨퍼런스의 하나로 '독일 해적당과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의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습니다. 독일에서 해적당의 활동을 직접 지켜본 강정수 님이 독일 해적당의 활동과 지향, 우리 사회에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를 해주셨고, 이후 참석자들 사이에 한국에서 해적당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발표 동영상은 여기(<http://onair.olleh.com/berlinlog/pYr>)를 참고하세요.

주민등록제도는 가라

11월 27일 넥센에서 또다시 1천32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7월 네이트-싸이월드에서 3천5백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넅달만에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정부도, 기업도 어느 누구도 유출된 주민번호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평생 요구할텐데 말예요!

이대로는 도저히 못살겠다 싶어서 지난 8일 유출 피해자들을 모아 주민번호 변경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민번호 제도에 경종이 울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원흉은 주민등록제도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지문날인도 큰일이지요. 2005년 헌법소원 패소로 잠시 주춤하였지만 우린 멈추지 않습니다. 21일 청소년들과 함께 지문날인 헌법소원을 또다시 제기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정부는 전자주민증을 도입하겠다고며 입장을 지르지만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우리의 저항은 계속됩니다.

법원 노릇도 하려 드는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진보넷에 대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사이트를 폐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홈페이지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방통위에 당한 단체가 여럿입니다. 최근 방통위가 게시물 삭제 명령을 남발하고 있거든요.

국가보안법이 유엔에서 폐지를 권고한 시대의 악법이라는 사실은 여러 차례 알려진바대로이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법원도 아닌 방통위가 법률 위반을 판결하고 홈페이지 폐쇄해라,

게시물 삭제해라 마구 명령한다는 사실입니다. 진보넷은 노동-인권단체들과 함께 방통위 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번 붙어 보자고, 으르릉!



패킷감청을 사용하는 이통사들

고속도로를 건설한 기업들이 이 고속도로에서 경쟁사의 제품이 운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승객들의 짐을 마구 뒤진다면 어떨까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KT와 SKT가 다음 마이피플과 같은 mVoIP를 제한하기 위해 패킷감청기술(DPI)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모바일 이용자들의 통신내용을 엿보고 있었다는 거지요.



지난 23일 진보넷은 경실련과 함께 KT와 SKT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하였습니다. 진보넷은 이미 지난 3월 인권단체들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사용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법원의 영장을 받아 시행하는 패킷감청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는 마당에,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자 몰래 모바일을 도청하다니요. DPI에 반대합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되다

지난 11월 22일,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조약을 날치기하는 초유의 사태에 어이도 없고, 너무 비통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발효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한미FTA가 발효되지 않도록 우리의 힘으로 막아야 합니다. 발효를 막지 못한다면, 그 이후에라도 정권교체를 통해 폐기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한미 FTA와 함께 이행법률안들도 날치기 처리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작권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미 FTA와 관계없는 내용을 슬쩍 이행법률안에 포함을 시켰네요.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은 보호기간이 20년이었는데, 이를 50년으로 소급 연장하는 내용의 조항인데요.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편입된 저작물에 다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위헌이라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위헌적인 저작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합니다. 물론 한미 FTA도!!!

성명서 보기(<http://act.jinbo.net/drupal/node/6683>)

세계의 약국, 인도를 구하라!



지난 11월 28일, 인도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1월 29일, 인도 대법원에서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특허를 둘러싸고 노바티스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 변론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인도특허법은 제약회사들이 기존 의약품들 '살짝' 바꾸어 새로운 특허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글리벡은 한국에서는 특허를 가지고 있지만 인도에서는 특허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노바티스가 문제제기한 것이지요.

한편, 인도는 EU와 FTA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인도-EU FTA가 체결되면 인도의 특허제도도 특허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입니다. 이는 세계의 약국 인도에서 생산되는 값싼 제네릭 의약품을 먹고 있는 전 세계 환자들에게는 재앙인 셈이지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 <http://act.jinbo.net/drupal/node/6684>

Section 110. 회원 인터뷰

전주미디어센터에서 활동 중인 "반지"회원님!

“이제 갓 유치원을 벗어난 아이들도 공정이용에 대해 보편타당하게 이해를 하는데 많이 배우신 어른들은 잘 모르나 봐요~” 이번 달 인터뷰 주인공은 5년간 꾸준히 진보넷 후원회원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반지'님 입니다. 현재 전주미디어센터에서 미디어교육 활동 중이며, 취미는 무려 "효소만들기!"라는 반지님! 거리가 멀어 아쉽게 직접 만나서 인터뷰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려 주셨답니다. 우리 반지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진주에 살고 있어요. 전주시민미디어센터'영시미'에서 미디어교육 활동가로 일하고 있죠. 얼마전까지 4개월 정도 미디어센터 일을 좀 쉬다가 복직했는데 오후 3시정도만 되면 엉덩이가 가려워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로 후원을 하시게 되었나요?

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에서 간사를 맡았었는데 메일링이 필요했어요. 메일링하면 진보넷! 그래서 자연스럽게 메일링 개설과 함께 후원도 시작하였습니다.

진보넷 활동 중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이슈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미디어교육 활동을 하다보면은 교육참여자들과 함께 새로운 창작활동을 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의 창작물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상영이나 배급 등 창작물을 외부로 공표해야하는 일들도 많은데 그러면서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구요. 당연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했던 창작물

의 이용이 저작권법이라는 잣대를 가져다데면 다 불법이라는 사실에 함께 수업을 하는 아이들이 깜짝 놀라기도 한답니다. 이제 갓 유치원을 벗어난 아이들도 공정이용에 대해 보편타당하게 이해를 하는데 많이 배우신 어른들은 잘 모르나 봐요~

무려 5년동안이나 진보넷을 꾸준히 후원 하시고, 지켜보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진보넷 행사는 무엇이었나요?

죄.....죄..죄송해요. 꾸준히 후원을 하였지만 꾸준히 지켜보지는 못하였어욤. ㅜㅜ 기억에 남는활동을 끄집어내라 하신다면..... 유물론자들의 기부로 서버를 바꾸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진보넷의 다양하고 주요한 여러 활동들 중에서 왜 하필 가장 먼저 기부천사 유물론자들이 떠오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최근 접한 겪은 인상 깊은 일이 있다면? 혹은 충격적인 기사나 흥미로운 기사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요즘 아무래도 강정마을에 관한 내용들에 관심이 갑니다. 멀다는 이유로 가지도 못하니까 더 그런것 같아요. 지금 있는 군대들을 더 줄여나지는 못할망정 자기들 맘대로 이것저것 정말 너무 한것 같아요. 또 다른 관심사는 아버지께서 암으로 투병중이신데, 병원, 제약사, 의료보험 등 의료문제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병원비나 약값이 너무 비싸요. 건보공단에 중증등록을 해서 의료비 할인이 되고는 있지만, 이전의 치료법이나 약들보다 효과가 있거나 질병 특성상 매일 먹어야 하는 약들은 비보험이구요. 제약사나 의료법인들의 관행적인 문제들도 너무 많은것 같구요. 힘없는 환자들은 당장에 너무 급하고 너무 전문적인 문제들이라 목소리내기가 쉽지가 않구요.

혹시 특별한 취미활동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취미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취미는 효소를 만드는 것인데요. 산이나 들의 산야초를 자연에 해가 되지 않을 만큼 채취해서 설탕발효 하는 것입니다. 물에 희석해서 음료수 처럼 마시면 되는데 건강에도 좋고 미용에도 좋고, 어쨌든 좋습니다. 처음에는 효소의 효능부분 때문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효소 공부를 하다보니깐 식생활을 넘어 자연농사라든지 환경문제 등 관심사가 넓어지더라고요.

진보넷 회원님들께 추천하거나 공유하고 싶은 책이나, 영화 등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책이나 영화는 아니고 음악 추천하고 싶은데요. '게으른 오후' 라는 밴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름만큼이나 나른하고 편안한 음악을 하는 밴드이구요. 여러가지 활동들로 피곤하고 힘들때 일수록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직 정규앨범은 나오지 않았지만 검색해보시면 음원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올 늦가을이나 초겨울쯤 공식앨범도 나올 예정이라구 하네요.

진보넷 회원님들께 추천하거나 공유하고 싶은 책이나, 영화 등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책이나 영화는 아니고 음악 추천하고 싶은데요. '게으른 오후' 라는 밴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름만큼이나 나른하고 편안한 음악을 하는 밴드이구요. 여러가지 활동들로 피곤하고 힘들때 일수록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직 정규앨범은 나오지 않았지만 검색해보시면 음원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올 늦가을이나 초겨울쯤 공식앨범도 나올 예정이라구 하네요.

진보넷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별히...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라고 하면 힘 빠지잖아요.

"진보넷 후원하면 이런 점이 좋다!" 진보넷 회원의 입장에서 아직 진보넷 회원이 아니신 분들에게 한 마디 해주셔요!^^

우선 계절마다 '액트 온'이 집에 옵니다. 어렵고 복잡한 정보운동 이슈들을 쉽게 풀어줍니다. 나와 친구들의 정보인권을 지키는데도 도움이 되구요.

·스트로베일 하우스·를 손수 짓고 싶다는 ·이마리오·회원님

10월 인터뷰 주인공은 지문날인반대운동, 주민등록증반대 활동을 하시면서 진보넷과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이마리오'님입니다. '스트로베일 하우스'(벚집으로 짓는 집)를 꼭 손수 짓고 싶다는 이마리오님, 현재는 '봉봉방앗간'이라는 공간도 만드는 중이랍니다. 함께 '이마리오'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마리오라고 합니다.



과거에 진보넷과 함께 지문날인반대운동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 활동가는 "이마리오님은 진보넷과 끈끈한 관계를 맺었었다!"라고 주장하시는데 사실인가요? 최근에서야 진보넷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신 이유는? 어떤 계기로 회원 가입을 하셨나요?

그렇죠 끈끈한 관계를 맺었었죠.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할 때 1주일에 최소 한번 회의하러 사무실을 들락거렸거든요. 참세상 영상팀에 활동하는 활동가들도 알고 있어서 드나드는데 별로 어색하지도 않았구요. 사실 2002년도에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작업할 때 처음 갔다가 이후 퍼블릭엑세스 프로그램인 KBS <열린채널>에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방영문제로 싸울때 함께 했죠. 소송까지 갔던 사안이고 1년 정도 걸렸었죠. 어쨌든 결국 방영이 되었으니까 다행이었죠... 후원회원으로 가입한 이유는 당연히 후원해야지 하고 있다가 뒤늦게 하게 되어서 미안할 뿐입니다. 서울에 있을 때 제가 몸담고 있었던 서울영상 집단 홈페이지 서버가 진보넷이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구요, 3년전 강릉에 내려와서 미디어센터에서 일하면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보넷 활동 중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이슈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개인정보 중에 특히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를 만든지 10년

이 되었지만 그 때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착잡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라는 다큐를 제작하기도 하셨는데, 최근 전자주민증 문제가 또 다시 이슈화되고,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소송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당연히 전세계에서 유일무이하며 영구불변인 개인식별번호 부여를 하는 주민등록제도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외에 우리사회에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거나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은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교조와 함께 문제가 되었던 2009년 7월의 시국선언 광고 “정권의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및 신문간지를 이유로 한 중징계 및 파면, 해임, 지난 2009년 말 국무회의, 공무원 복무규정 중 일부개정을 통해 “공무원은 정부정책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금지” 토록 하면서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 원천봉쇄, 2010년 1월, 2011년 6월 2차례에 걸친 기획수사를 통해 민주노동당에 소액후원을 한 공무원, 교사의 정치기본권 침해 등 여러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중립을 통해 공익에 반하는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관건선거에 동원되는 것 등을 막음과 더불어 공무원에게도 정치기본권 제한의 최소화, 보장의 최대화를 위함인 ‘정치중립의 의무’ 를 빌미로 투표 이외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정부의 논리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많은 시민들이 휘둘러 올바른 판단을 저해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시민들이 어떠한 정치적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성숙함이 없다고 전제하는 것인지 정부에 되물어야 할 듯 하네요.

최근 겪은 인상 깊은 일이 있다면? 혹은 충격적인 기사나 흥미로운 기사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강릉에 내려오면서 꼭 하고 싶었던 일들 중 하나는 집짓기였습니다. 대단히 거창한 집이 아니라 '스트로베일 하우스'라고 말그대로 벚집으로 짓는 집인데 가장 저렴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라고 하죠. 한국에 소개된 것은 최근의 일이고 이미 그런 형태의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도 있구요. 언젠가 될 지 모르지만(돈이 없어서 땅을 살 수가 없어요 특히나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가 결정나면서 아파트값과 더불어 땅값이 무척 뛰었다고 하네요) 꼭 내손으로 내가 앞으로 살 집을 꼭 지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찍어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특별한 취미활동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취미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별다른 취미활동은 없구요 대신 전 아파트를 싫어하고 시내를 좋아하지 않아서 강릉시 외곽에 집을 얻어서 살고 있거든요. 개 한마리, 고양이 한마리와 같이 살고 있는데 여유가 있어서 좋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들~~ 서울벗어나서 사시는거 강추합니다...

진보넷 모활동가가 "최근 이마리오님이 모종의 사업을 벌이고있다!"라고 귀뜸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봉봉방앗간은 핸드드립 커피가게이자 일종의 살롱같은 역할을 했으면 하는 공간입니다. 미디어센터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과 같이 만드는 공간이구요 2층건물인데 전시도 할 수 있고 혼자라도 부담없이 놀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중입니다. 요즘 서울도 핸드드립 커피가게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좋은 원두를 갈아서 내려먹는 원두커피는 진짜 좋습니다. 전화로도 신선하게 볶은 원두커피를 주문받아 택배로도 보내드리니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애용해 주세요~~

진보넷 회원님들께 추천하거나 공유하고 싶은 책이나, 영화 등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영화는 최근에 개봉했던 애니메이션 <소중한 날의 꿈> 꼭 보셨으면 좋겠구요 dvd로 출시되어있는 <행복한 엠마, 행복한 돼지, 그리고 남자> 강추합니다.

진보넷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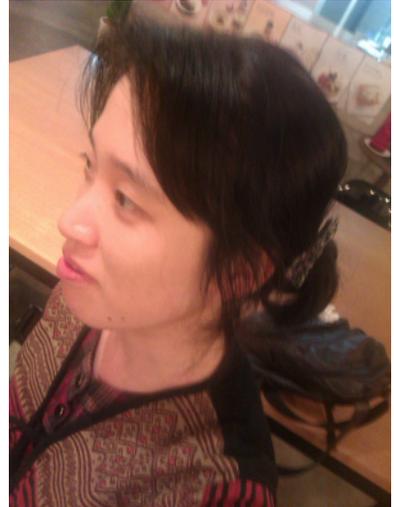
진보넷 스마트폰 어플하나 만들어주세요.... 다양한 소식들을 바로바로 접했으면 좋겠네요 ㅎㅎ

진보넷 자원활동가 박현진님

이번달 인터뷰 주인공은 진보넷 자원활동가 박현진님입니다. 올해 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록 모니터링을 함께 하면서 진보넷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최근 귀촌을 계획하고 있다는 박현진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현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예술영화관 등에서 홍보 자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통심의위 회의록 모니터링 자원활동을 하시면서 진보넷과 인연을 맺었는데요. 어떤 계기로 자원활동을 하게 되었나요?

کمماینگ 하지만 인터넷을 쓰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고, 정보인권 침해 부분을 저도 당하게 되어서 정보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넷 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마침 회사를 그만두고 진보넷에서 방통심의위가 어떻게 인터넷 내용규제를 하는지 모니터링 한다고 해서 자원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방통심의위 회의록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워낙 인터넷 내용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몰랐어요. 방통심의위가 천안함,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애매한 부분까지 규제를 하는 것에 놀랐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유해정보로 본다는 것도 놀랐어요. 국가가 국민의 사상적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침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심의위가 아주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청소년 유해나 음란 부분에 관련해서 저도 헛갈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를 음란물 혹은 유해물로 볼 것인가 논란이 되는 지점인데요. 방통심의위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

용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아예 뿌리뽑고 없애버리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보넷 자원활동, 어떠셨나요?

자원활동하는 목적 자체가 단체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했던 것인데 그런부분에 있어서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진보넷이 어떤 단체인지 염탐하려는 목적도 있었는데요. 짧긴 했지만 초기의 목적을 달성 했다고 할까요? 짧은 시간이어서 진보넷에 대해 좋게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자유롭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진보넷 활동 중 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이슈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전반적으로 정보인권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병원을 이용하고 인터넷 상에 병원 후기를 올렸는데 병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정보인권 부분에 관심이 있었고 사람들이 다른 부분보다 정보인권에 대해서 사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직접 당해본 입장에서 심각하게 느껴지더라구요. 최근에는 저작권법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한미 FTA 비준되고 나서 저작권법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떠오르는 관심입니다.

취미활동이 있다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지금도 팔레스타인평화연대나 다른 단체 자원활동 하면서 실제로 그 단체에 도움은 못되고 있는데 그냥 사람들 만나게 좋아요.

최근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몸이 좀 안좋아서 전 직장을 그만두었고 지금도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때문에 귀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귀농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귀촌은 농사는 짓지 않더라도 시골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보는 거죠. 귀촌이나 생태적 삶에 대해 최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계획 중에 있기도 합니다.

진보넷 회원님들께 추천하거나 공유하고 싶은 책이나, 영화 등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울독립영화제가 12월 9일부터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우수한 독립영화를 많이 만날 수 있어 좋습니다. 한 작품만 꼽자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한 '두더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대만감독이 만든 작품인데 만화가 원작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네요.

앞으로 진보넷 자원활동을 한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나요?

저작권법 관련해서 자원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에 가면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한 마디 해주셔요.

소셜펀치도 번창하고 진보넷에서 하는 운동들이 더 활발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photograph of a man with dark hair, smiling broadly. He is wearing a brown jacket and has a backpack strap visible on his left shoulder. The background shows a snowy outdoor area with a large building featuring glass windows and white columns. There are some evergreen trees and other people in the distance, some wearing winter gear. The overall scene is bright and festive, likely during a winter event.

Section 111. 센터 속사정

마루인터넷, 서버 모니터링 프로그램 기증



웹호스팅, 디자인, 솔루션 개발 서비스 등을 제공해온 마루인터넷에서 진보넷에 서버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기증해주셨습니다. 마루인터넷은 지금까지 오픈소스인 리눅스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해오셨는데요. 오픈소스 포럼에서 뵈게된 허기행 대표이사님께서 비영리 사회운동 단체인 진보넷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에 개발한 시스템을 흔쾌히 기증해주셨습니다. 마루인터넷에서 제공한 서버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진보넷도 회원 분들께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허기행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마루인터넷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www.maruinternet.com)

[진보넷 밀어주기 #2]
너, 개인신상 털려봤니?

2006년 리니지 120만명, 2008년 유선 1,081만명,
2011년 7월, 네이트-사이월드 3,500만명.
경안! 2008~2011년 현재,
한국 정부 5,900만건 주민정보 30원씩 판매!
"이미 공공정보가 된 주민등록번호,
진보넷은 재발급을 요구합니다!"

주민번호 재발급 소송인단 참여하기 della@jinbo.net
진보넷을 후원해주세요! <http://www.jinbo.net>

진보넷 홍보 이미지카드 만들었어요

진보넷이 후원회원모집을 위한 캠페인으로 이미지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미지 카드를 하나씩 공개하고 있는데요. 주요 활동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진보넷을 홍보하려고합니다. 각자 이미지카드에 들어갈 문구도 작성하고, 예쁜 만화는 기술팀 명훈님께서 그려주셨답니다! 어때요? 진보넷 밀어주고 싶은 마음이 마구마구 샘솟지 않나요?^^ 앞으로도 하나 둘씩 공개가 될텐데요. 회원 여러분도 진보넷 이미지카드 많이 홍보해주세요!

진보넷 BIG FUN 프로젝트 성황리에 마칩니다!

지난 11월 23일 정보인권영화 상영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진보넷 활동가 포함 10명의 관객이 함께 영화 관람을 하였습니다. 단편 2편과 데이비드지우기, Article12를 상영하였는데요. 아늑한 공간에서 정말 편안하게 관람을 하였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에는 영화보다 재밌는 뒷풀이를 하며 영화에 대한 이야기 꽃도 피웠습니다! 상영작 중 단편 '피자주문'은 여기(<http://act.jinbo.net/drupal/node/6686>)서 보실 수 있습니다.



11월 24일 소셜펀치 오픈 기념식 겸 진보넷 13주년 후원의 밤에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소셜펀치 오픈식에서는 소셜펀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하고 두물머리 승욱님께서 후원금 모집 성공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오시지는 못했지만 마음은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진보넷 힘차게 활동하겠습니다! 그럼 1년 뒤 진보넷 14주년 후원의 밤을 기약해요^^ 사회적후원시스템 소셜펀치가 궁금하신 분은 여기 (<http://act.jinbo.net/drupal/node/6689>) 클릭! 2011년 진보넷 활동영상은 여기 (<http://act.jinbo.net/drupal/node/6691>)를 클릭!

소셜펀치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11월 21일, '소셜펀치'가 오픈했습니다. 사회운동을 위한 온라인 후원 플랫폼, 소셜 펀치는 진보네트 워크센터가 직접 기획하고, 개발하였습니다. 진보넷의 부족한 개발 인력상 디자인 및 코딩을 외부 디자이너에게 의뢰하였고, 아직 애초에 기획했던 모든 기능이 모두 개발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1차 오픈을 했지만, 소셜펀치 개발은 계속됩니다. 모바일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페이지도 만들어야 하고, 페이스북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소셜펀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 앱으로도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받아, 버그를 수정하고 부족한 기능은 보완할 계획입니다.

샤방샤방한 디자인 제작과 지긋지긋한 웹페이지 코딩, 그리고 날밤새는 개발자를 위해, 개발비용의 일부분을 여러분이 지원해주세요~ 물론 이 정도 사이트의 개발을 위해서는 훨씬 많은 개발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책임지겠습니다! 소셜펀치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후원함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기술팀의 고민~



소셜 펀치가 드디어 오픈했지요! 독립네트워크 인력의 1/3은 소셜 펀치 개발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른 2/3는 돈도 벌면서; 진보넷 다음 사업을 구상 중입니다. 지난 운영 위원회의에서 전망을 요구한 데에 따라 현재 사회운동에 필요한 건 뭘까 네트워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구요. 그런데 이런 거 쓸 때마다 왜 이렇게 하는 일은 많은

데 쓸 게 없지...? 다음에는 이런 저런 일을 했고 계획중이라고 조목조목 말씀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사실 기술활동가를 뽑고 있는데 아무도 안 와서ㅜㅜㅜㅜ 큰일 났어요 사람 좀 구해 주세요ㅜㅜ



인권센터를 여는 시민의 힘!

“기적의 저금통” 보내기 릴레이 이벤트

기간 : 11월 15일 ~ 12월 31일

장소 : 기적의 저금통을 열어 펼쳐볼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가능.

“인권센터를 여는 시민의 힘! 기적의 저금통” 1만 개의 희망을 보내 주세요.

인권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들의 공간인 인권센터! 그 꿈같은 기적을 여는 “기적의 저금통” 1만 개가 전국 각지의 인권지킴이 여러분께 분양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강연장에서, 농성장에서, 천릿길에서...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권센터를 함께 만들겠다고 수많은 시민들이 “기적의 저금통”을 받아 가셨습니다. 눈망을 초롱초롱한 어린 아이에서부터 팔순의 어르

신까지 저희가 건네는 손을 잡아주셨던, 그 한분 한분의 소중한 마음이 예쁘게 접힌 “기적의 저금통”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저금통들이 전국 각지에서 돌아오는 날, “인권센터”는 더 이상 몇몇 사람만의 꿈이거나 상상 속의 공간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인권재단 사람은 11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인권센터를 여는 시민의 힘! 기적의 저금통 모으기 릴레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인권지킴이 여러분의 소중한 희망을 담뽕 담은 “기적의 저금통”을 보내주세요.

어떻게 보내나요?

* 저금통 보내는 방법 하나.

저금통이 꼭 차면 개봉해서 인권재단 사람 계좌(신한은행 100-025-564580 재단법인 인권재단 사람)로 보내주세요. 입금하실 때 “저금통 000(보내시는 분 이름)”라고 적어주세요.

* 저금통 보내는 방법 둘.

꼭 직접 가져오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저희 인권재단 사람 사무실(120-840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번지 2층)으로 직접 가져오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금품인 관계로 우편발송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잠깐! 보내시기 전에 꼭..

인증 사진 한 장, 찰칵! 찍으셔서 인터넷에 올리시고 이벤트 페이지(페이스북 혹은 트위터)에 짧은 사연과 함께 링크를 걸어주시거나, 인권재단 사람 이메일(dshrfund@hanmail.net)로 보내주세요.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 : <http://www.facebook.com/event.php?eid=277553162288108>)

* 11월 말까지 보내기 어려우시나요?

걱정마세요. 인권재단 사람에서는 12월 14일(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 송년모임을 겸한 자축의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자리에 저금통을 들고 참석해 주십시오. 일정과 장소는 조만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저금통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은 금액에 관계없이 인권센터 건립 주춧돌로 이름을 새기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권재단 사람(02-363-5855, www.hrfund.or.kr)으로 문의해 주십시오.